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189-10

2018년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CONTENTS

Chapter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1

- 01 제도 도입 배경 3
- 02 법률 개요 7
-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2

Chapter II

신고 및 등록단계

13

- 0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15
- 0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24
- 03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33
- 04 변경 신고 및 등록 36
- 05 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39

Chapter III

운영단계

45

- 01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47
- 02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57
- 03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62
- 04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66
- 05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70
- 06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73
- 07 신상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78
- 08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87
- 09 표시·광고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92

10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97
11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2
12 장부 및 대장 비치·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5
13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09

Chapter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113

01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115
---------------------------	-----

Chapter V

FAQ(자주 묻는 질문)

121

01 신고·등록 기준 및 절차	123
02 종사자 자격 등 기준	125
03 업무처리 절차	126
04 자본금 요건 확인	129

Chapter VI

참고자료

131

0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33
02 결혼중개업체 관리 법령 총괄표	209
03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214
04 결혼중개업 관계법령 총괄	215
05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221
06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228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7
08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55
09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 주요사례	279

『18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주요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17년도)	변경 후('18년도)	비 고
페이지 4~6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추가 및 내용 보완
	법령 연혁	법령 연혁 최근 개정사항 반영	
페이지 12	결혼중개업체 현황	결혼중개업체 현황	현행화
	업체 현황	업체 현황('17. 11. 30 기준)	
페이지 15~18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현행화 (변경)
	국내결혼중개업은 30일 이내에 신고처리 완료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 *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 통지, 미 통지 시 그 기간 (3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한 것으로 봄(민원인에게 안내 필요)	
페이지 33~35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현행화 (변경)
	매월 1회, 넷째주 목요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교육신청	
페이지 81~84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현행화 (보완)
	중요 신상정보 제공 및 신상정보 확인서 작성 등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건강진단서 상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페이지 133~213	법령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현행화 (변경)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p. 133),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통합(p. 190),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통합(p. 194), 결혼중개업체 관리 법령 총괄표(p. 209)		
페이지 214~278	결혼중개업 관련 참고자료 현행화		현행화 (변경)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p. 214), 결혼중개업의 분쟁해결 기준(p. 2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p. 237),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p. 255)		

CHAPTER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01

제도 도입 배경

-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로 친인척 및 직장동료 등 친분에 의한 소개 문화가 쇠퇴하면서 상업적인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또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와 국내에서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으려는 세대 변화와 맞물려 상업적 형태의 전문 결혼중개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함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위한 첫 단초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12.14 제정, '08.6.15 시행)
- 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 활동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 법적 근거 마련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정 : '69.1.16
 - 의의 :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나 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법 제2조(적용범위) :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상례 및 제례 기타의 가정의례에 적용한다.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73.3.13
 - 의의 : 결혼중개업의 허가제 도입
 - 법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 제1항 :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 : '93.12.27
 - 의의 : 행정규제 완화와 자율화 차원에서 결혼상담업의 영업제도를 신고제로 개선
 - 법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 제1항 :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 폐지로 인한 자유업 전환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폐지 : '99.2.8
 -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제 도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 '05.2.1
 - 제안사유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 '07.12.1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8.6.15
 - 국내결혼중개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국제결혼중개업 시·도지사에게 등록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겸업금지를 시행하고, 결혼중개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및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 국제결혼중개시 신상정보 및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0.5.17 공포, '10.11.18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맞선 당사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번역하여 제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요건에 중개사무소를 추가하고, 외국 현지법령 준수범위의 확대 등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및 공시제도 등 도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2.2.1 공포, '12.8.2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업체현황 등을 게시하도록 한 공시제도 도입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결혼중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5년) 및 열람·사본 교부 의무화, 중개실적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강제규정 신설.
 -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 도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3.22 공포, '13.9.23 시행)
 -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외국 현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 및 홍보영상 제작·송출 근거 마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8.13 공포, '14.2.14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하도록 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시대의 건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권장 및 자본금 상시 충족 등 지도점검 강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2.3 공포, '15.8.4 시행)
 -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시 1억원 이상 자본금 충족 의무,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 상습적 미가입시 영업소 폐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등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 명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6.3.2 공포, '16.3.2 시행)
 - 결혼중개업법의 목적을 결혼중개업을 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수정·보완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7.3.21 공포, '17.9.22 시행)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7.12.12 공포, '17.12.22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 외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내·국제 결혼중개 실태조사는 2020년 실시

02

법률 개요

(가) 기본목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 ▶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 방지 및 책임의식강화
-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 예방 및 인권보호
- ▶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도입

- 국내결혼중개업 : 신고제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제

▶ 결혼중개업자의 결격 사유

- 『형법』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 허위, 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외국 현지 법령 준수,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 제공 금지 등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벌칙 적용

(나) 결혼중개업 관리 관련 용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결혼중개

-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 결혼중개업

-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것
 - 무상으로 결혼 상담이나 알선을 하는 경우는 제외

■ 국내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자

- 관할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참고

결혼중개업의 개념 및 범위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반복·계속할 의사로서 행해지는 결혼중개 행위라면 단 한 번의 행위도 결혼중개업에 포함

(참고, 대법원 1989.1.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 935 판결)

다) 법률 주요 내용

■ 결혼중개업의 등록제 및 신고제

-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 관할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내 시·군·구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요건 충족

■ 결혼중개업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금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의 게시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설명
-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증 받은 후 맞선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
-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 외국 현지법령 준수(형사법령 및 행정법령)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 등
-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맞선·집단기숙 금지
- 혼인관련서류 보존(5년) 및 열람·사본 교부
- 정기적인 중개실적 보고(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경우 등
 - ※ 법 제18조 제1호·제2호 또는 제23호, 제2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취소
- 폐쇄조치
 -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 등
 - ※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르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또는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명의(상호) 대여자,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한 자, 거짓 정보 제공자, 개인
정보 부당 사용자 등
 -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 부당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 자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18세 미만 소개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자
 - ※ 양벌규정 적용 : 법인(개인)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科)함(법 제27조)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 시·군·구에 신고(등록)된 국내결혼중개업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임

(단위 : 개소, '17.11.30. 현재)

구 분	국내	국제	비고
계	830	368	1,198
서울특별시	237	66	303
부산광역시	92	16	108
대구광역시	84	20	104
인천광역시	16	16	32
광주광역시	34	22	56
대전광역시	31	22	53
울산광역시	12	5	17
세종특별자치시	4	1	5
경기도	73	55	128
강원도	9	8	17
충청북도	28	21	49
충청남도	34	20	54
전라북도	46	24	70
전라남도	26	19	45
경상북도	29	21	50
경상남도	69	24	93
제주특별자치도	6	8	14

■ 시·군·구청에서는 반드시 관내 업체의 신규 신고·등록, 변경, 폐업, 행정처분 현황 등을 결혼중개업관리시스템(행복e음)상 즉시 현행화 확행(일원화 체제)

CHAPTER

II

신고 및 등록단계



0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시·군·구청 소관업무)

(가) 근거조항

- **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6조(결격사유), 제7조(점업금지),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2조(수수료), 제26조(벌칙)
- **영**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 **규칙**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15조(수수료)

(나) 신고접수 전 확인사항

■ 공통사항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의 충실 기재 여부 확인
 -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필요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1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보증보험증서 유효기간 확인
 - ※ 예시) 주사무소 1곳(2천만원), 분사무소 3곳(3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5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 중개사무소 확보(영 제1조의2 제2호)
 - 국내결혼중개업의 사무소 확보 의무화 등 법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0.11.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
-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음.
 -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같은 상호로만 사용해야 함.

참고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신고 수수료 30,000원 납부 확인(수입증지)
- 종사자명부 확인(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 ※ 미 통지 시 그 기간(3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신고서 접수 시 민원인에게 신고수리간주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함)

■ 법인인 경우(공통사항 외에 아래 추가사항 검토 필요)

- 정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공통사항 외에 아래 추가사항 검토 필요)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중 하나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외교부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외국인인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 부착 확인으로 가능(아래 “아포스티유 제도 개요” 참조)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확인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개요

▶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해외 공문서는 주재국 한국영사관의 확인 없이 효력 인정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입국리스트는 참고자료3 확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112개국

▶ 아포스티유 발급대상문서

① 정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 ②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 세부내용 참조

- www.0404.go.kr(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서비스/비자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FAQ)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다) 서류 심사 시 유의사항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신고서의 성명과 각종 서류의 가입자 성명이 동일한지 여부
- 법에서 정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구분	조회내용	조회기관
법 제6조 (결격 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할경찰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6.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외교부 여성가족부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국 시·군·구 (결혼중개업 담당부서)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법 제7조 (겸업 금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전국 시·군·구 (직업소개업 등록부서) 지방노동청 (고용관리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외교부 영사홈페이지 (www.0404.go.kr)

※ 결혼중개업 운영자의 결격사유 여부 수시 확인(접수 시, 우선 행복e음 시스템 활용 전국 검색 및 열람)

■ 가능한 신고서상 결혼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무소 확보, 실제 영업 여부 등 확인 필요

- 최소한의 사무소 확보 기준 충족여부 확인
 - 사무실에서 개인의 신상 관련 상담업무가 이루지고 계약서 등의 개인정보 관리
 - 따라서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 주사무소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신고
 - 주사무소는 대표자가 근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을 말하고, 서류상으로도 주사무소로 기록하여 제출한 곳
- 결혼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제출

위법사례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간 주사무소(본사) 및 분사무소(지사개념)로 협약을 맺고 분사무소를 지사(점)으로 하는 경우

→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 : 두 업체는 지사가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업체임

-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중개사무소 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사실 통보
 - 결격사유, 겸업여부 등 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수행, 현장 확인 등 직접 분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소재지 시·군·구청으로 송부
-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신고수리간주제도

-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라)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 신고번호 부여방법

- 시·도명(2자리)-시·군·구명(2자리)-국내-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예) 서울-중구-국내-10-0001
 - ※ 신규 및 재발급(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시, 위의 형식으로 번호 부여
 - 단, 재발급의 경우 발급연도와 일련번호는 최초 신고수리한 신고년도와 번호기재(신고필증 뒷면에 변동사항 기재)

■ 신고관리대장에 기록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신고·등록관리대장)에 기록

■ 신고필증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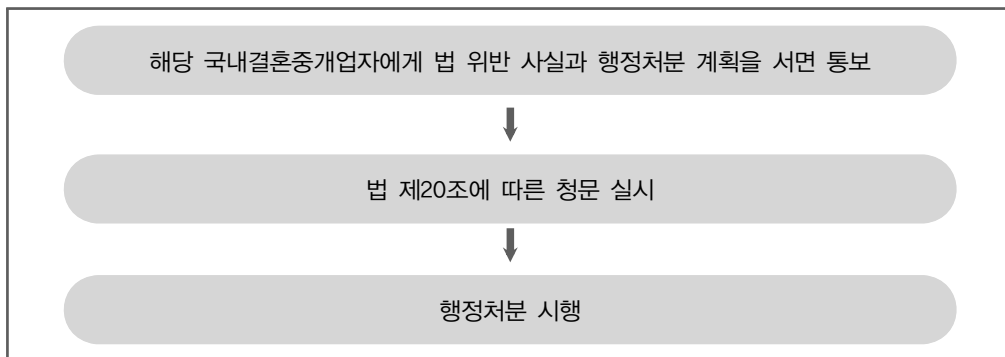
- 규칙 별지 제2호 서식(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의 신고필증 교부
 - 서류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 동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서 반려
 - ※ 신고필증상 신고일자 : 서류심사 및 확인절차 완료 후 관할관청에서 적합 결정한 날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신고필증(등록증)은 각 사무소별로 원본을 게시할 수 있도록 사무소 개수 만큼 교부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및 방법

- 미신고 국내결혼중개업체 관계자의 내부 고발, 피해자의 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를 통해 파악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중개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위반시(국내 : 폐쇄 조치) 처분함을 서면 통지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및 규칙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개업자로부터 신고필증을 반납 받아야 함(반납은 중개업자의 의무)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행정처분

- 법 제19조(폐쇄조치 등)에 따라 처분청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서면으로 영업장 폐쇄조치 처분 계획 통보
- 법 제19조(폐쇄조치 등)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 해당 영업소를 폐기하기 위한 조치 시행

-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 형사처벌 의뢰(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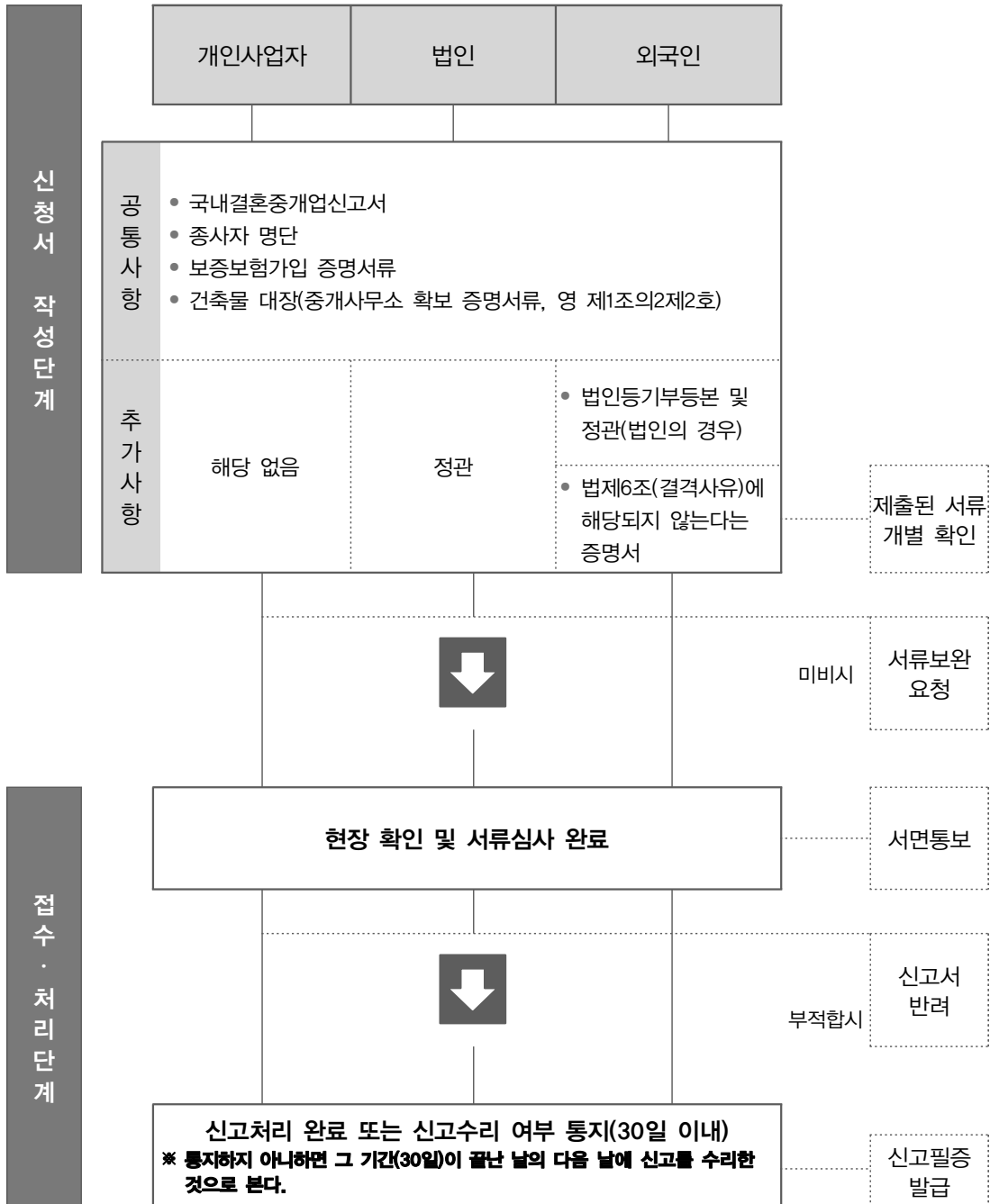
■ 행정처분의 승계

- 법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각각에 대해서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행해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음
 - ※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 등의 신고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 이하 행정처분 시행 대상에 모두 적용

■ 양벌규정

-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대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적용
 - ※ 이하 형사처벌 의뢰 대상에 모두 적용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바) 업무절차도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0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시·군·구청 소관업무)

가) 근거조항

- **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6조(결격사유), 제7조(점업금지),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2조(수수료), 제24조의3(자본금), 제26조(벌칙)
- **영**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 **규칙**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5조(변경등록),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15조(수수료)

나) 등록접수 전 확인사항

■ 공통사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의 충실 기재 여부 확인
- 법에서 정한 교육수수료증 사본(교육실시기관에서 발행) 확인
- 자본금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재산목록(별표 제5호의2) 및 증빙자료
 - 자본금액 : 1억원(중개사무소별)

- 해당자산 : 부동산, 동산, 차량, 예금 등
- 자산평가기준 : 취득가액 원칙(입증자료 제출시만 인정)
 - 결혼중개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만 인정
 - 일부사용 자산의 경우 지분만 인정(본인 소유 건물은 전체 인정)
 - 신규차량과 중고차량 구입 시 1년간 인정(그외는 자동차세 과표기준)
 - 현금의 경우 법인(법인명의), 개인(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자본금은 상시충족 요건임(중요 안내 사항)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설정
 - 보증보험증서 유효기간 확인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피보험자가 기존 관할관청인 시·도지사로 되어 있을 경우 변경된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음.
 -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같은 상호로만 사용해야 함.

참고**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중개사무소 확보(영 제2조제3호)
- 등록수수료 30,000원 납부 확인(수입증지 등)
- 종사자명부 확인(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법인인 경우(공통사항 외에 아래 추가사항 검토 필요)**

- 정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공통사항 외에 아래 추가사항 검토 필요)**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중 하나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외교부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①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②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외국인인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 부착 확인으로 가능
 - 아포스티유 부착은 문서발행국에서 문서의 진위만 확인한 것으로, 번역공증이 별도로 필요함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확인

(다) 서류심사 시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등록신청서의 성명과 각종 서류의 가입자 성명이 동일한지 여부
- 법에서 정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
- 법에서 정한 교육 수수료 여부와 해당 교육기관이 발급한 확인증인지 여부
- 중개사무소별로 제출된 자본금 증빙서류 자산평가액 확인

■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구분	조회내용	조회기관
법 제6조 (결격 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할경찰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6.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외교부 여성가족부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국 시·군·구 (결혼중개업 담당부서)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법 제7조 (겸업 금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전국 시·군·구 (직업소개업 등록부서) 지방노동청 (고용관리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외교부 영사홈페이지 (www.0404.go.kr)

※ 결혼중개업 운영자의 결격사유 여부 수시 확인(접수 시, 우선 행복e음 시스템 활용 전국 검색 및 열람)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 **등록신청서상 결혼중개사무소 소재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무소 확보, 실제 영업 여부 등 확인 필요**

● **최소한의 사무소 확보 기준**

- 사무실에서 개인의 신상 관련 상담업무가 이루지고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관리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 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

● **주사무소 관할지역 시·군·구에 등록**

- 주사무소는 대표자가 근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을 말하고, 서류상으로도 주사무소로 기록하여 제출한 곳

● **결혼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별로 등록신청서 작성**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상호와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위법사례

별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협약을 맺고 분사무소로 하는 경우
→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 : 두 업체는 지사가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업체임

●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주사무소 외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통보**

- 결격사유, 겸업여부 등 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수행, 현장 확인 등 직접 분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
- 등록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소재지 시·군·구로 송부

-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담당
- 법 제24조에 따라 분사무소 개설 시 대표자는 분사무소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라)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 등록번호 부여 방법

- 시·도명(한글2자) - 시·군·구명(한글2자) - 국제(한글2자) - 발급년도(숫자2자리) - 일련번호(숫자4자리)

예) 서울 - 중구 - 국제 - 10 - 0001

- ※ 신규 및 재발급(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시, 위의 형식으로 번호 부여
 - 단, 재발급의 경우 발급연도와 일련번호는 최초 등록한 등록연도와 번호기재(등록증 뒷면에 변동사항 기재)

■ 등록관리대장에 기록

- 규칙 별지 3호 서식(신고·등록관리대장)에 기록

■ 등록증 교부

- 규칙 별지 제6호 서식(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의 등록증 교부
 - 서류심사 및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 동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서 반려
 - ※ 등록증 상 등록일자 : 서류심사 및 확인절차 완료 후 관할관청에서 적합 결정한 날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신고필증(등록증)은 각 사무소별로 원본을 게시할 수 있도록 사무소 갯수 만큼 교부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및 방법

-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의 내부 고발, 피해자의 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를 통해 파악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중개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시(국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함을 서면 통지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준용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행정처분

- 법 제19조(폐쇄조치 등)에 따라 처분청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서면으로 영업장 폐쇄조치 처분 계획 통보
- 법 제19조(폐쇄조치 등)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 해당 영업소를 폐기하기 위한 조치 시행
-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 형사처벌 의뢰(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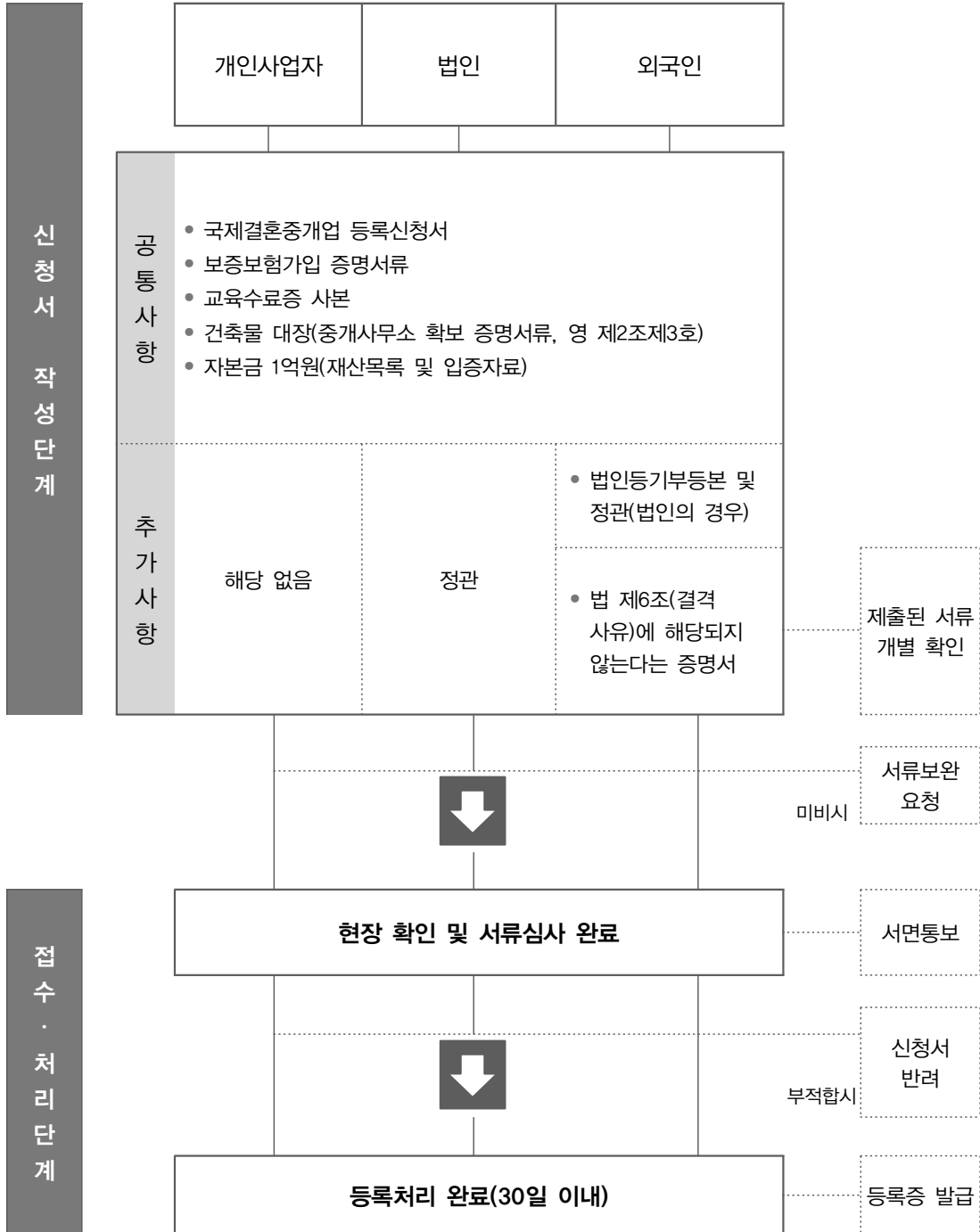
■ 행정처분의 승계

- 법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각각에 대해서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행해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음
 - ※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 등의 신고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 이하 행정처분 시행 대상에 모두 적용

■ 양벌규정

-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대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적용
 - ※ 이하 형사처벌 의뢰 대상에 모두 적용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바) 업무절차도



03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가) 근거조항

- **법**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 **규칙**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및 별표3,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및 별표4

(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 교육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 동 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 고시
 - ※ '08~'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 실시
 - ※ '11~'14년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 실시
 - ※ '15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교육 실시

■ 교육의 구성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등(규칙 별표3)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강의	1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보호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규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강의	1
결혼중개업 실무	- 상담 이론 및 실무	강의	1

■ 교육 시기

- 공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 신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신청

■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 교육일정 : 매월 1회, 넷째주 목요일 교육 실시
※ 교육일정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 회원가입 및 신청

■ 교육신청 시 주의사항

-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교육을 받더라도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교육 신청 전에 결격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도록 안내
※ 법 제6조(결격사유), 제7조(겸업금지) 참조
- 이미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신규로 분사무소를 낼 경우 주사무소 대표자는 분사무소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함(법 제24조 제3항)
※ 신규 분사무소 신청시 책임종사자의 교육필증 확인

(다)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교육

- 교육대상 :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 교육방식 : 순회교육, 집합교육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등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시간 등(규칙 별표4)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제도	- 소비자보호 관계 법규 해설 -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선택운용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배부)	1
국제혼인 관련 제도	- 국제혼인 관련법규 해설 -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정착단계 관련법규 및 제도 소개		1
국제결혼 가족 상담	- 성공 및 실패사례 - 질의응답		1

비고 : 교육방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

04

변경 신고 및 등록

(가) 근거조항

- **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2조(수수료), 제28조(과태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규칙** 제3조(변경신고), 제5조(변경등록),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15조(수수료)

(나)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자본금 내역 변경 사항(재산목록)

다) 변경 신고·등록 방법 등

- 결혼중개업자는 신고·등록한 사항 중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등록하여야 함
 - ※ 개명 등의 사유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변경 등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변경 신고·신청서)에 변경 내용 작성 후 제출
-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 * 영업신고(신규) : 3만원
 - * 변경신고 : 없음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 영업등록(신규) : 3만원
 - * 변경등록 : 없음
-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민원인이 변경 신고 또는 등록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신소재지)은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소재지)으로부터 신고 또는 등록서류 일체를 송부 받아 기록·관리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 등록번호 부여 및 처리 방법

- ① 민원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신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일단 접수를 받은 후 구(舊)소재지 행정기관에 민원인 변경신고사항 통보 및 신고·등록 관련 서류 일체 요청
 - ② 구(舊)소재지 관할 기관은 민원인이 변경신고 요청한 사항에 따라 신(新)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업체 신고·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송부
 - ③ 신(新)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은 신규 신고·등록번호 부여한 후 그 결과를 구(舊)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
 - ④ 구(舊)소재지 관할 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에 따라 업체현황을 처리(기존 신고·등록업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고 별도 관리)
 - * 신규등록번호 부여로 기존의 등록번호는 결혼중개업관리시스템 상 삭제되므로 문서기록 관리 필요
- 예) A 결혼중개업체가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에서 성북구로 이동 시
- (성북구) 변경 신고·등록 처리 후 강남구에 결과 통보
 - (강남구) A업체 기록을 삭제하고 별도 관리

● 보증보험증권 변경신고 시 유의사항

- 보증보험증권 만기로 인한 재계약인 경우 : 변경등록으로 처리하지 않음
 - 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에서 제출받거나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을 확인 후 사본 보관)을 제출받아 재계약연장확인(수수료를 수납하지 않음)
 - ※ 결혼중개업관리시스템에 보증보험증권기간이 만료된 업체 목록은 3개월 전부터 공지
→ 사전에 관할 업체에 고지해 만료일까지 보증보험증권에 재가입하도록 유도
 - ※ 보증보험 가입여부 수시 파악
 - (재)가입하지 않은 경우 : 국제(1차 : 등록취소), 국내(1차 : 영업정지 3월, 2차 : 영업정지 6월, 3차 : 폐쇄조치)
-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손실금이 생겨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 변경등록으로 처리

■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변경신고는 신고수리간주제도 적용

-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라)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첨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 수수료 : 없음(2015. 8. 4 시행)

05

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가) 근거조항

- **법** 제4조의3(지도점검)
- **규칙** 제6조의3(지도점검)

(나)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및 방법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 및 안내 필요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다) 점검방법

- 관내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 신고·등록 의무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 판단
 - 상호 변경 여부, 중개사무소의 수 변경 여부,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전 여부, 대표자 및 종사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변동 여부, 보증보험의 변경 여부, 자본금 상시 충족여부 점검 등
 -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참고

(라) 시정명령(법 제17조)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과는 별개로 진행)

-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바) 과태료 부과 처분(시정명령과는 별개로 진행)

- 변경 신고·등록 의무 위반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영 제8조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 진행내용 및 절차

-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및 영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권자는 사실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시 사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결혼중개업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
-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처분청은 처분청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진행함

예시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 업 체 명 :
- 신고(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운영업체의 경우) :

구 분	주 요 확 인 내 용	이행 여부		조치사항
		이행	불이행	
신고·등록 (법 제3~5조)	1. 적법한 방법의 신고·등록 여부			
	2. 변경사항 신고·등록 여부 - 중개사무소 상호, 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보증보험, 재산목록 등			
	3. 휴업·폐업 신고 및 휴업 후 재개업 신고 이행 여부			
결격사유 (법 제6조)	1. 결격사유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금지 이행 여부 (년 2회 확인)			
겸업금지 (법 제7조)	1. 겸업금지사항 이행 여부 (직업소개사업자·파견사업주·해외이주알선업자의 겸업 금지)			
게시의무 준수 여부(법 제8조)	1.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신고필증·등록증 게시			
	2.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3.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절차 게시			
명의대여금지 (법 제9조)	1. 명의대여 금지사항 이행여부			
결혼중개 계약서의 작성 (법 제10조)	1. 서면계약서를 작성 및 교환			
	2.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5년간 보존 여부(2012.8.2 이전 작성 계약서는 3년간 보존)			
	4. 거짓기재,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사항 이행 여부			

구 분	주 요 확 인 내 용	이행 여부		조치사항
		이행	불이행	
신상정보제공 (법 제10조의2, 법 제18조)	1. 공증 받은 신상정보서류(증빙자료 포함) 제공 여부 (2012.8.2 이전 서류 공증 불필요)			
	- 신상정보확인서 상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 서면 동의 여부			
	-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여부			
	- 맞선 전 만남에 대한 서면 동의서 구비 여부			
	- 신상정보의 번역 제공 여부			
	2. 거짓된 신상정보 제공 여부			
	3. 과장 또는 중요사항 누락된 신상정보 제공 여부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법 제10조의3)	1.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기록보존 (법 제10조의4)	1. 기록보존여부 (결혼계약서, 신상정보확인서 및 증빙서류, 그 밖의 혼인관계 서류 등)			
부정한방법의 모집·알선 금지 등 (법 제10조의5)	1.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 금지 사항 이행 여부			
	2. 부당한 금품 징수 행위 금지 사항 이행 여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법 제12조)	1.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 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광고 금지사항 이행 여부			
	2. 기타 거짓정보 제공 여부			
미성년자소개 금지 등 (법 제12조의2)	1. 18세 미만인 사람 소개 금지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금지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 소개 금지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서 기숙 금지			
개인정보 보호 (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작성 및 시행 여부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여부			
	5. 물리적 접근 제한 여부, 잠금 시설 설치 여부			
	6.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여부			

구 분	주 요 확 인 내 용	이행 여부		조치사항
		이행	불이행	
장부 등 비치 (법 제14조)	1.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2. 회원 명부 비치 여부			
업무제휴 (법 제14조의2)	1. 외국현지 업체와의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여부			
	2. 외국현지 업체와의 업무제휴 시 계약서작성여부, 거짓·광고여부			
보고 및 검사 (법 제15조)	1.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금지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금지 사항			
시정명령 (법 제17조)	1.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			
자본금 (법 제24조의3)	1. 자본금(1억원) 요건 상시충족(보유) 여부			
보증보험 (법 제25조)	1. 보증보험 가입여부			
기 타	1. 표준약관 사용여부 - 표준약관 미사용의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했는지 여부 * 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 약관법 제34조 제2항 제3호			
	2. 기타 법령 위반 사항			
홈페이지 운영업체의 경우 (※ 홈페이지 운영업체만 해당)				
홈페이지 게시 의무 (법 제8조)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8. 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여부			
	9. 개인정보처리방침 공표(게시) 여부 - 처리목적, 처리 보유기간 등 8개 필수항목 포함여부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경우	1. 본인 동의를 받고 사진을 게시하는지 여부 (사진하단에 “본인 동의” 표시)			
	2. 외국인회원 명부와 대조하여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근거 없는 사진을 게시한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			
기 타	1. 기타 법령 위반 사항			

CHAPTER

Ⅲ

운영단계



01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가) 근거 조항

- **법** 제3조, 제4조 (결혼중개업의 신고, 등록),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영**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 **규칙** 제3조(변경신고),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나) 보장수준 및 방법

(1) 보장 금액

■ 보장 금액

- 국내결혼중개업 :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설정
- 국제결혼중개업 :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설정
 - ※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합한 금액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함. 각 사무소 별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음

(2) 보장방법과 절차

- **보장 방법** : 결혼중개업자는 신고 및 등록 전에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가입금액 : 보장금액의 0.329%(2015.10.1. 요율변경, 2015.10.1.부터 적용)

- 국제결혼중개업 : 164,500원(1개소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 65,800원(1개소 기준)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계약 내용

● 보험계약자

- 결혼중개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계약자가 되며, 또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됨

●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임

●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보험계약자인 결혼중개업자가 선택
- 보험시작 시점은 신고·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시점 또는 그 이전이 되어야 하며 시작시점이 접수일보다 이후인 보증보험증서는 무효

● 보험가입금액

-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을 최저한도로 정한, 보험금 지급 최고 한도금액

보증보험 가입회사 및 영업점

-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주)” 1곳이며, 보험계약의 체결은 서울보증보험의 “사이버지점”이나 해당관청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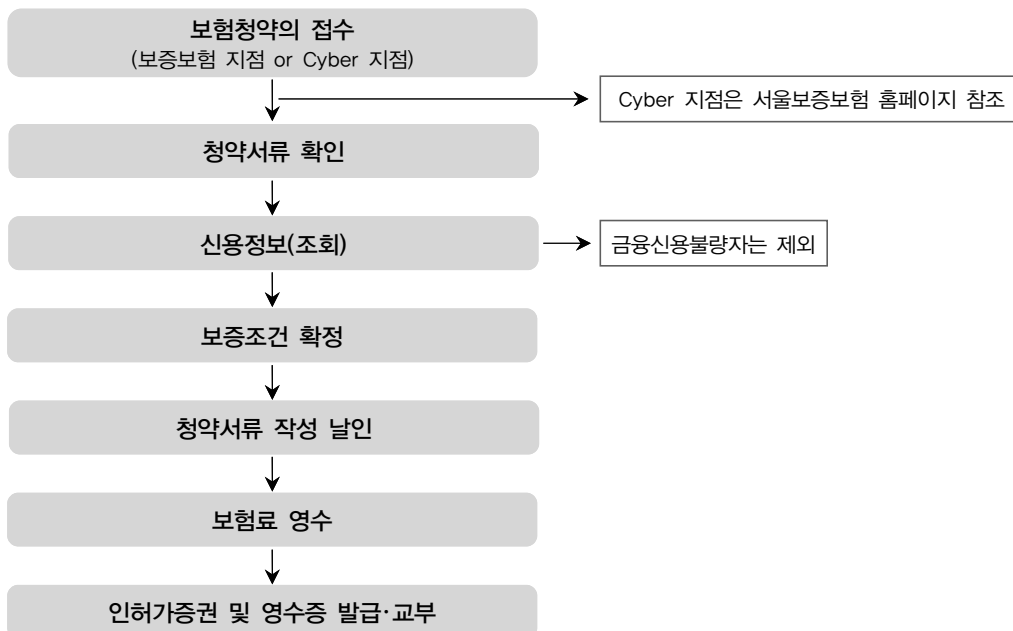
■ 보증보험 개요

보증보험 개요

1. 보증보험이란?	•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형식으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 회사가 일정한 대가(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
2. 보증보험 유형	• 이 법에서의 보증보험 유형은 “인허가보증보험”이며, 채무자의 법령상 또는 계약상 채무 또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3. 보증보험의 목적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4. 보험사고의 성격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담보
5. 중도해지 여부	• 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중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보험사고가 없었음이 명확한 때에는 해지 가능

■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 가입 절차도



● 보험계약의 청약

- 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계약을 청약하며, 청약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 청약에 대한 인수 심사

-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이행보증에 관한 청약을 받은 보증보험회사는 청약 서류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조건(연대보증인 추가 여부 등) 확정

● 보험자의 승낙

- 청약서를 최종 작성하고(보험계약자의 서명날인)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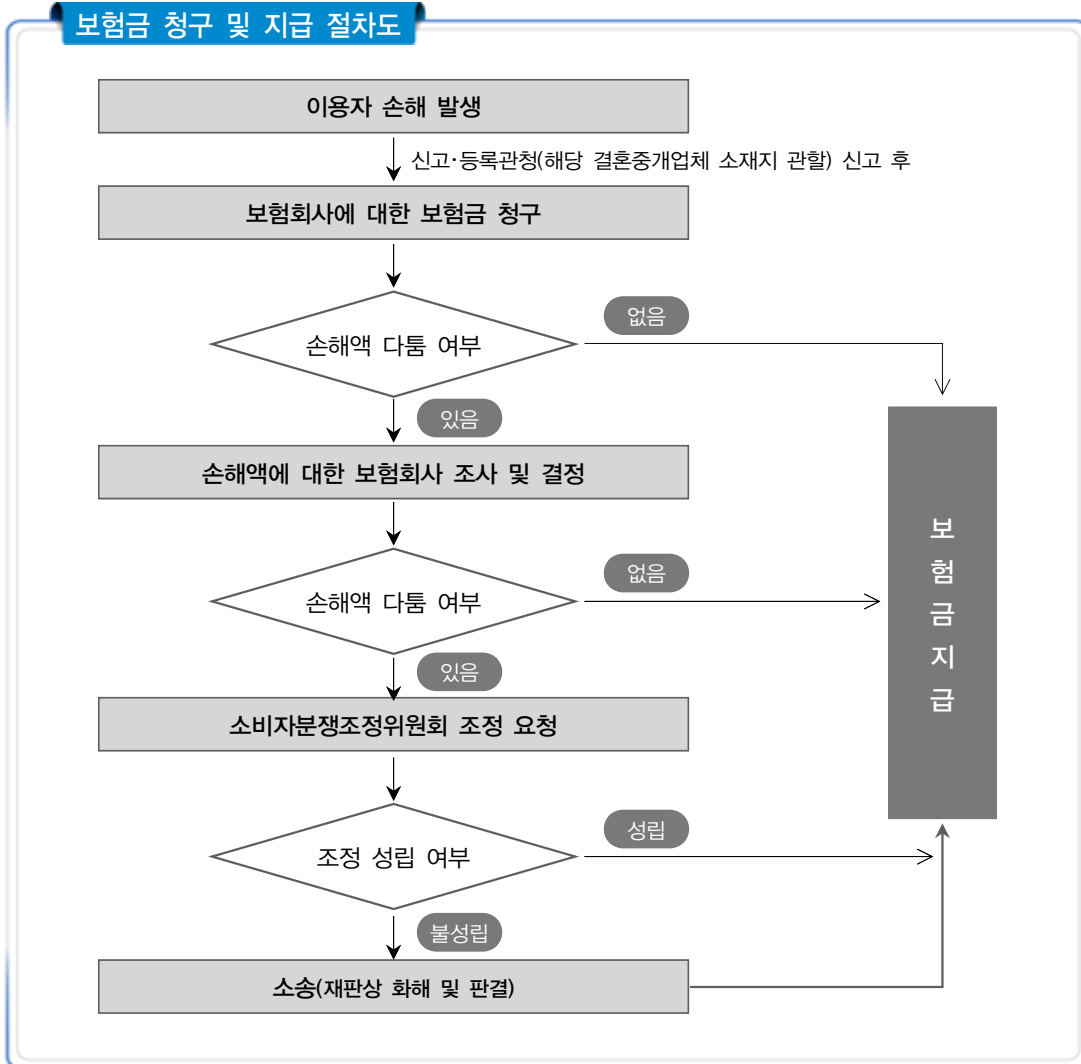
- 보험계약 청약서가 접수되고 보험료가 영수되면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 교부

(다)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1) 지급 사유

-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2) 보험금 청구 절차



■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유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기관 및 서류

-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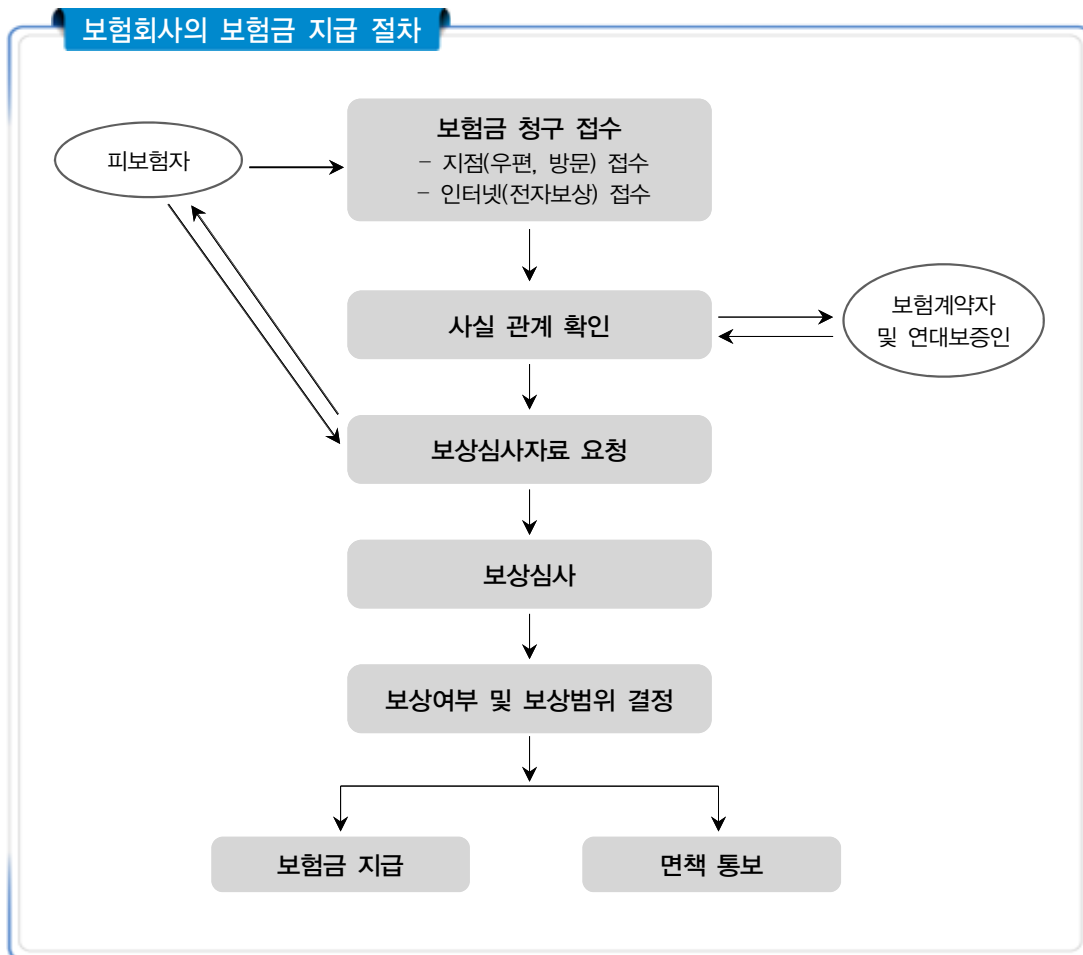
-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합의서로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 청구
- 소비자분쟁조정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

- 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권 경합과 지급액

-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지급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해당 관청)는 보험금 청구서, 당사자간 계약서, 보험증권, 손해의 입증자료, 보험금 청구용 인감증명서(관청인 경우 공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 통상 보험증권, 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취소 통보 문서, 민원인의 민원서류, 손해액 입증서류 등 확인
-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증권상에 기재된 위험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청의 민원처리 내용, 증권 및 약관 내용, 등록취소 서류로 확인
-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 해당 관청의 손해배상 명령서, 조정기관의 조정결정문,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확인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참고

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라도 보험가입 기간 중에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이는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시효의 기산점

-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민법」 제166조)

참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참고, 대법원2005.12.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라) 보증의 변경·관리

(1)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보증보험의 보전

■ 보증보험금의 보전

-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손해를 입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즉각 부족분을 보전하여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제3항)

■ 보전 기한

-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
 - ※ 일반적인 보증보험 기간만료의 경우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험 가입
 - ※ 휴업기간중 보증보험 기간만료의 경우 재영업 신고시 보험증권 사본 제출

■ 보전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영업정지 3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차 위반에도 등록 취소(법 제18조제1항)

(2) 다른 보증보험으로의 변경

- 보증보험을 가입한 결혼중개업자가 그 내용사항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 보증보험 기간의 만료
 -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의 예치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 및 신고관청에 신고
 - 보증보험증권 만기로 인한 재계약인 경우 : 변경등록으로 처리하지 않음
 - 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에서 제출받거나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을 확인 후 사본 보관)을 제출받아 재계약연장확인(수수료를 수납하지 않음)
 - ※ 결혼중개업관리시스템에 보증보험증권기간이 만료된 업체 목록은 3개월 전부터 공지
→ 전에 관할 업체에 고지해 만료일까지 보증보험증권에 다시 가입하도록 유도
- 보증 변경신고 서식
 - 보증의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02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6조(결격사유),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결격사유 점검 시기

-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 필요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 휴업,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종료 후 영업재개 시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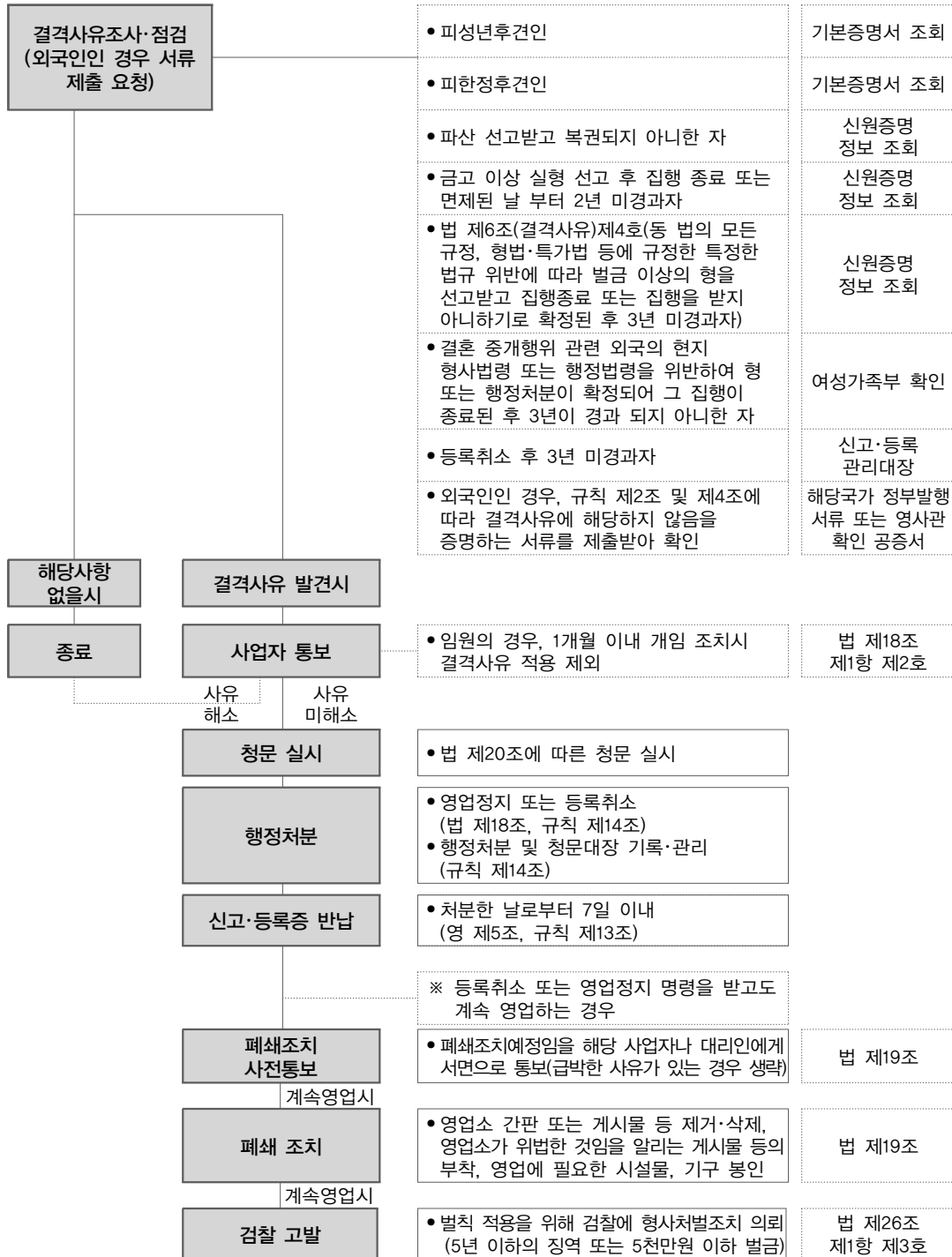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직원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임원 및 직원
 - ※ 외국인인 경우도 동일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별도 서류제출 요구 없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점검

미성년자 여부 :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여부

-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자 신원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본적지로 판결 내용이 전달되어 기본증명서에 등재되므로 본적지에 조회하여 확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부

- 대법원 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파산선고가 확정되거나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 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해당자의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파산 후 면책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본적지 통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원증명서상에는 애초에 파산에 관한 기재 자체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본적지에 조회하여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부

-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부 등은 지자체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전과기록조회를 통해 확인
 - 신원조회만으로는 범칙금 처분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에 조회 필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풍속영업 규제법」,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벌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부

-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엔 일정기간 동안 해당인의 본적지 시·군·구청 등을 통한 신원조회시 전과내역이 드러나므로 신원증명 정보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신원조회만으로는 벌칙금 처분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에 조회 필요
 - 법 제6조 제4호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금 통고 처분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요청

■ 외국인의 경우, 결격사유 점검 방법

- 규칙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따라 법 제6조(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같은 신원정보는 신청인이 속한 국가의 정부가 발급한 신원증명서류(우리나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에 해당)를 제출받아 확인
 -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가 없는 경우,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써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 일본의 경우, 주민표와 신분증명서, 대만은 신분증명서, 미국은 Residence Record를 제출받아 확인
- 법 제6조(결격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정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우리나라의 범죄경력조회서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된 서류 확인

※ 중개업자가 미국인인 경우,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Criminal History Record Information(CHRI)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지역 경찰청을 통해 공증을 받은 후 주미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조치

■ 결격사유 발견 시

- 중개업자에게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적시하고 즉시 결격사유 해소를 위해 조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속된 직원에 대해, 법인의 경우 임원 및 직원에 대해 결격사유 해소 요구
 -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조치가 불가피
 - 단, 법인 임원(대표 포함)의 경우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대표 포함)을 개입하는 경우는 제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격사유 해당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시(국내: 폐쇄조치, 국제: 등록취소)에 처분함을 서면 통지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03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7조(겸업금지),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8조(과태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겸업금지 업종 및 위반여부 점검 시기

■ 겸업금지 업종

- 직업소개업(「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
-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해외이주알선업(「해외이주법」 제10조)

■ 위반여부 점검 시기 : 매년 2회(상·하반기)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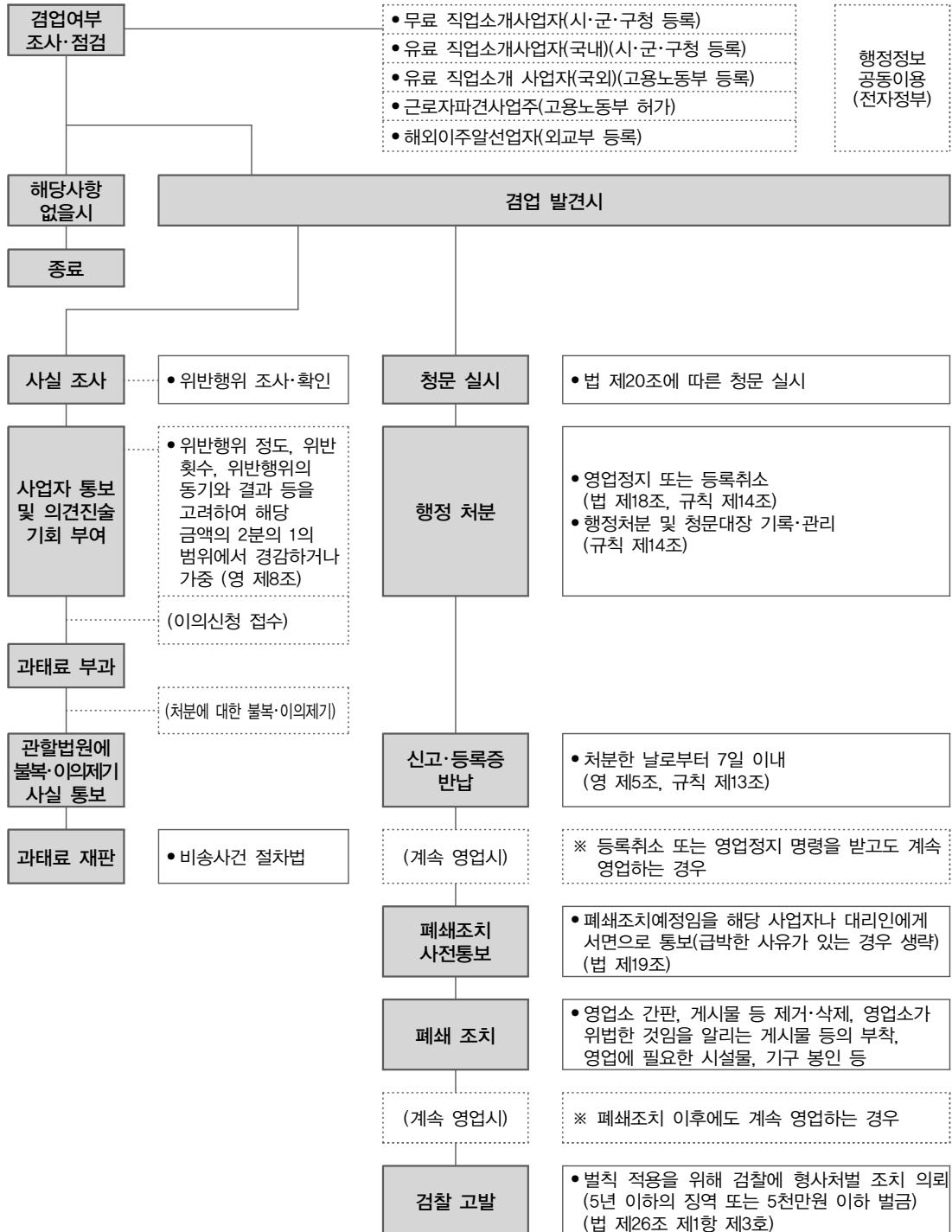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처분 병과)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바) 업무수행 내용

■ 중개업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요구 없이 검업금지 해당 여부 점검

● 직업소개사업자 여부

-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업소개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울행정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전국 시·군·구 직업소개업 등록부서에 확인 요청
- 국외 유료·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여부는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노동청(고용관리과)에 확인 요청

※ <국내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편에 소개된 내용 참조

● 근로자파견사업주 여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확인 요청

● 해외이주알선업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에서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서비스/비자 > 해외이주 > 해외이주 알선업체

■ 검업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진행)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검업금지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영업정지 6월), 3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처분함을 서면 통지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

- 영업금지 위반은 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및 영 제8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별표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 처분 각 절차별 진행 내용은 〈신고 및 등록단계편의 “법 위반 여부 조사·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04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8조(과태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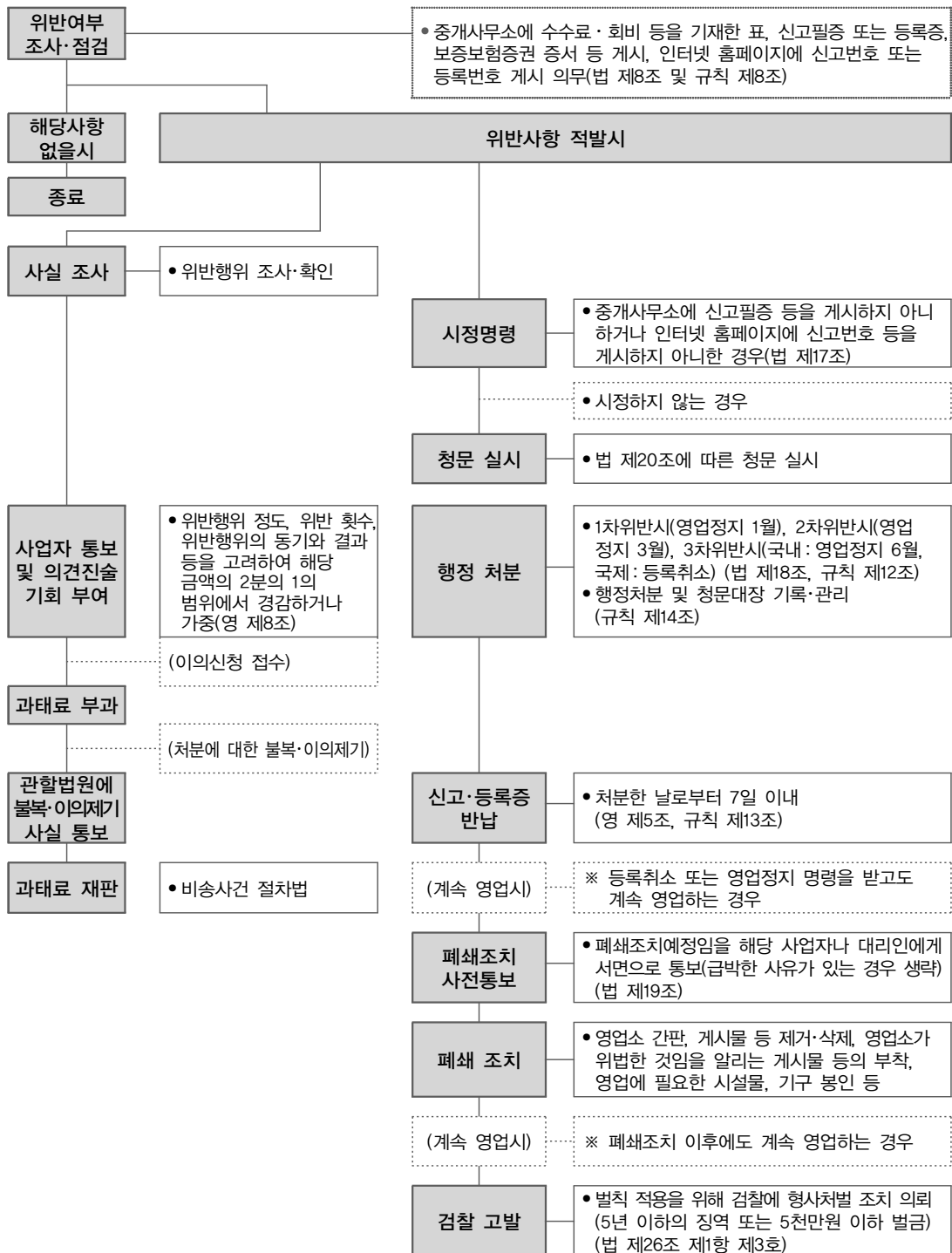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병과)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후속 처분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I. 결산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바) 업무수행 내용

■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필증, 등록증 등 게시 여부를 점검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 점검사항

- 중개사무소(영업장)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증서를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게시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 등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상호, 대표자 성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상기 게시사항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 하여야 함. 다만,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이용약관,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은 연결화면을 통해서도 게시 가능(규칙 제8조 제4항)

■ 신고필증 등의 게시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동시 처분

■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

-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및 규칙 제10조(신고 필증 등의 게시)에서 정한 게시의무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법 제17조(시정명령) 4호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과태료 부과(시정명령과 별개로 진행)

- 신고필증 등 게시 위반은 법 제28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영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 처분 각 절차별 진행 내용은 〈신고 및 등록단계편의 “법 위반 여부 조사·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 법 제18조 제17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후속처분
-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05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6조(벌칙)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상)

나) 점검방법

- 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로 점검 및 후속 조치
- 타 시·도에서 결혼중개업 대표자로 등록된 종사원이 있는 결혼중개업체
- 계약서와 입금 통장 확인하여 종사자 명의 통장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종사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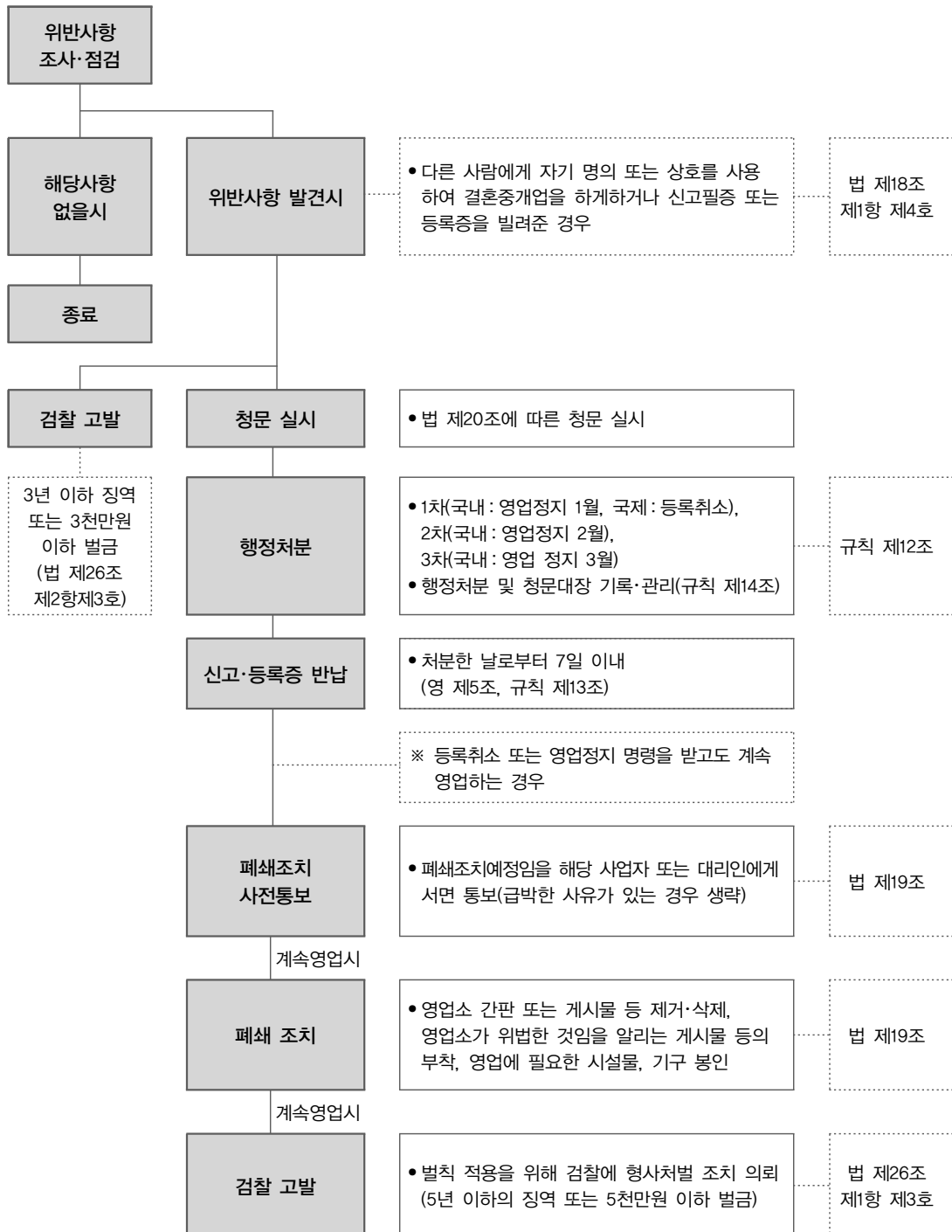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의뢰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금지사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신고 필증 또는 등록증 대여금지

명의 대여	• 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사업의 성질상 다른 이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영업면허를 가진 자가 무면허인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책임	• 영업의 주체를 잘못 알아서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행정처분(형사처벌 의뢰와 별개로 진행)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9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2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3월) 처분함을 서면 통지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의뢰(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

-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의뢰
 -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6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 **영**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등),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보존기간),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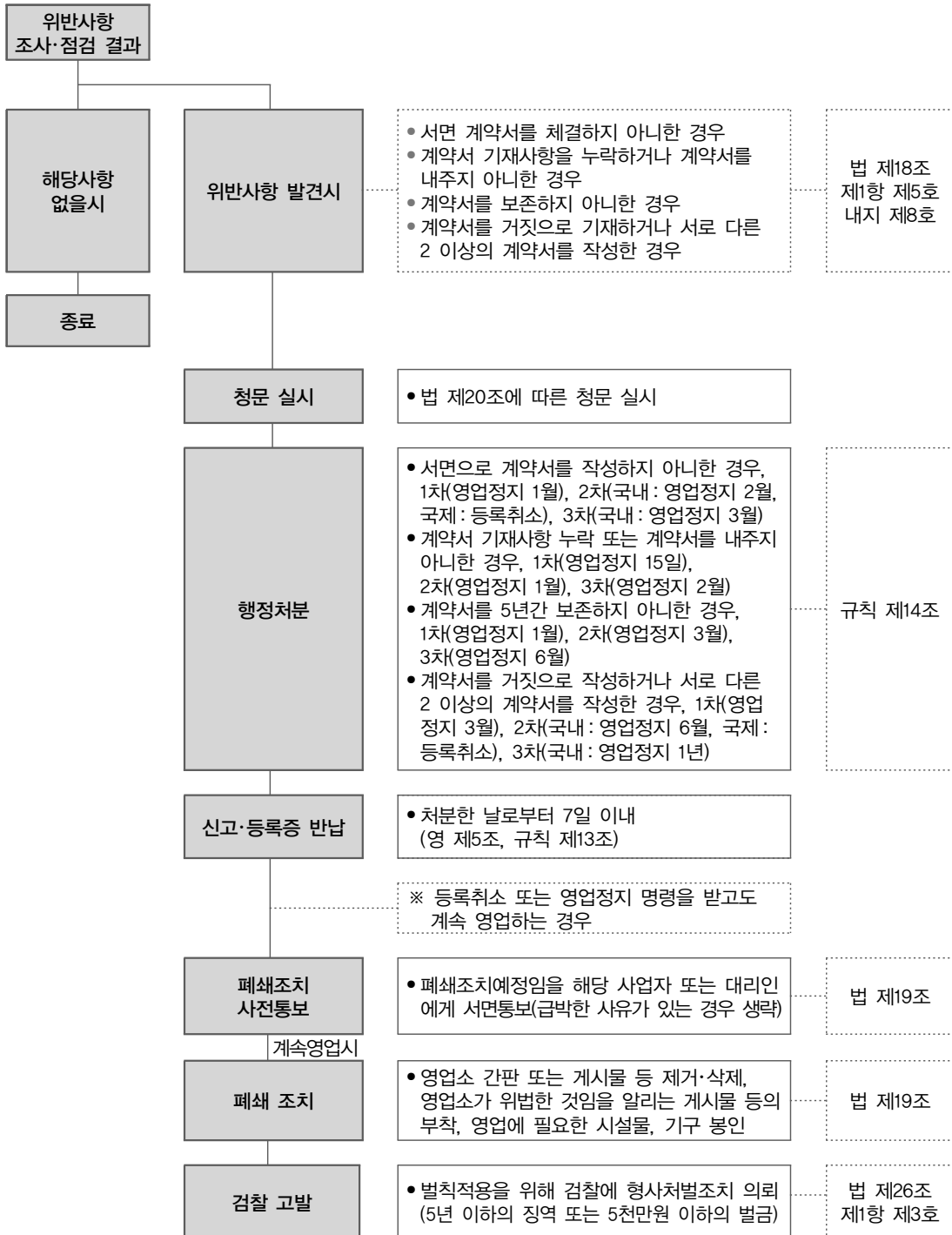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 의무 기재사항

-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계약서 외국어 번역본 제공 등(영 제3조)

-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계약 체결시 중개하는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모국어로 된 번역본 제공

■ 계약서 작성 의무 이행 여부 점검 항목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국내결혼중개업자 :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 국제결혼중개업자 :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 해당 결혼중개업자를 방문, 최근 5년간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서 상의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계약서 작성 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

※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표준 약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함.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 사업자에게 동 내용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인지도시킬 필요성이 있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했는지 여부 및 계약서를 내주었는지 여부

- 상기 무작위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

- 현재 계약서를 보관중인 이용자로부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결혼중개업자가 보관중인 계약서와 이용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대조하여 기재 사항 누락 여부 확인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결혼중개업자가 보관중인 계약서 전수 조사를 통해 5년간 보존 여부 확인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 이용자를 통해 확보한 계약서 사본과 결혼중개업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대조하여 계약서 내용 허위 기재 여부 및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행정처분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서면으로 통지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3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3월)
 -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시(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영업정지 2월)
 -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영업정지 6월)
 -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1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3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1년)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 계약서 관련 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담당 공무원 권한 보장

- 법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영업정지 등) 및 제28조(과태료)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07

신상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 **영**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제9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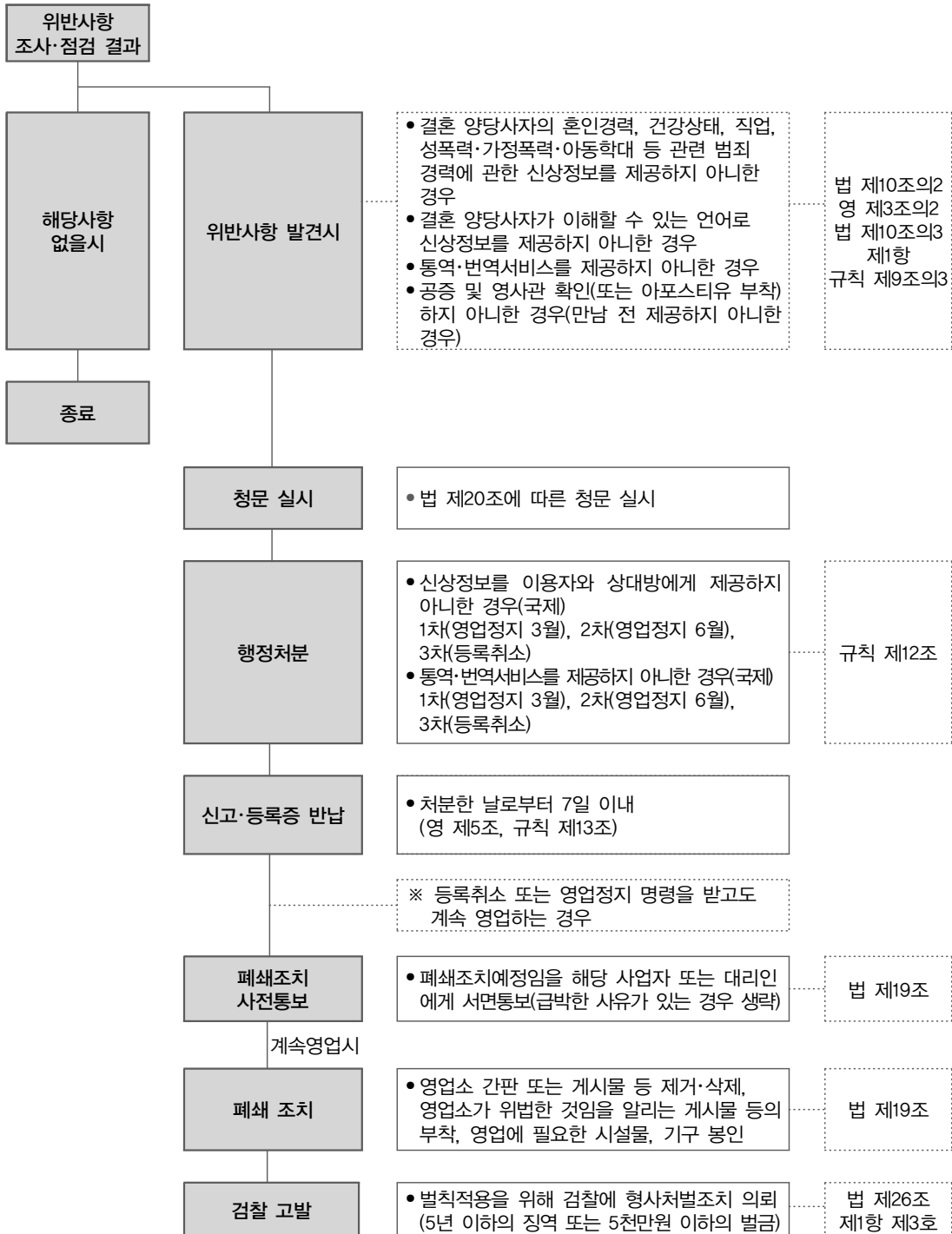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중요한 신상정보 제공 및 신상정보 확인서 작성 등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영 제3조의2 및 규칙 제9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서류를 공증을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했는지 여부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점검
 - 외국 상대방의 경우 공증인의 공증과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현지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 여부 점검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 여부(규칙 별지 제8호의4)
 -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함(규칙 제9조의2)
 -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 여부 확인(규칙 별지 제8호의5)
- 건강진단서 항목 중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법 제10조의2제2항)

●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관련 구비서류 점검

확인사항	증빙서류
혼인경력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 내용 : 혼인, 이혼 경력 등 - 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정신질환 포함)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등의 감염여부 - 발급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
직업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 확인서, 근무처 대표확인서, 기타 직업 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 자격증 사본(의사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등) •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임·수산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단, 회원증명은 불가함), 영농사실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
범죄경력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관련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별지 제8호의2) : 국제결혼중개업자 작성 • 범죄경력조회회신서(별지 제8호의3) :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발급 ※ 범죄경력조회시 특정범죄에 한해서 조회 불가능하므로, 조회된 범죄경력 중 다음 사항의 범죄경력 유무를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 기재(실효된 형 포함)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3조 내지 제14조 위반 범죄경력 - (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 범죄경력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 아동학대 - (舊)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확인사항	증빙서류
범죄경력	•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조희대상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 함), (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3. (舊)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4. (舊) 「유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 경찰서(민원실)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증명서
기타	기타 상대방 소속국가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참고로, 민법 제816조에서도 혼인취소의 사유와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내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주요 내용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가능(제807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제808조)
- 근친혼 및 중혼의 금지(제809조 및 제810조)

제808조(동의를 필요한 혼인)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재판상의 이혼은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

- 해당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규칙 별지 제8호의4 서식)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점검
-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여야 함(예시 참고)
 -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정보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함(영 제3조의2제4항)

예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2.8.2〉

서면 동의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국적의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증명서류
및 번역본을 제공받았으며, ○○○○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신상정보 확인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등(영 제3조의2 및 규칙 제9조의3)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신상정보 확인서와 구비서류를 결혼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했는지 여부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하였는지 점검(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동 내용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음
 - 결혼 양 당사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음
 - ※ 통역·번역서비스 제공 시에는 국어 및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

신상정보 확인서 및 번역본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결혼중개업자가 보관중인 계약서와 함께 신상정보 제공확인서 및 번역본을 보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처분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서면 통지
 -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영업정지 6월), 3차 위반시(등록취소)

-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영업정지 6월), 3차 위반시(등록취소)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08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6조(벌칙)
- **영**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제5조(신고 필증 등의 반납)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관련 주체별 역할

■ 외교부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현지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위반자 신상정보 등을 통보 받아 여성가족부로 통보

■ 여성가족부

- 외교부에서 통보해온 신상정보 등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해온 신상정보 등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

-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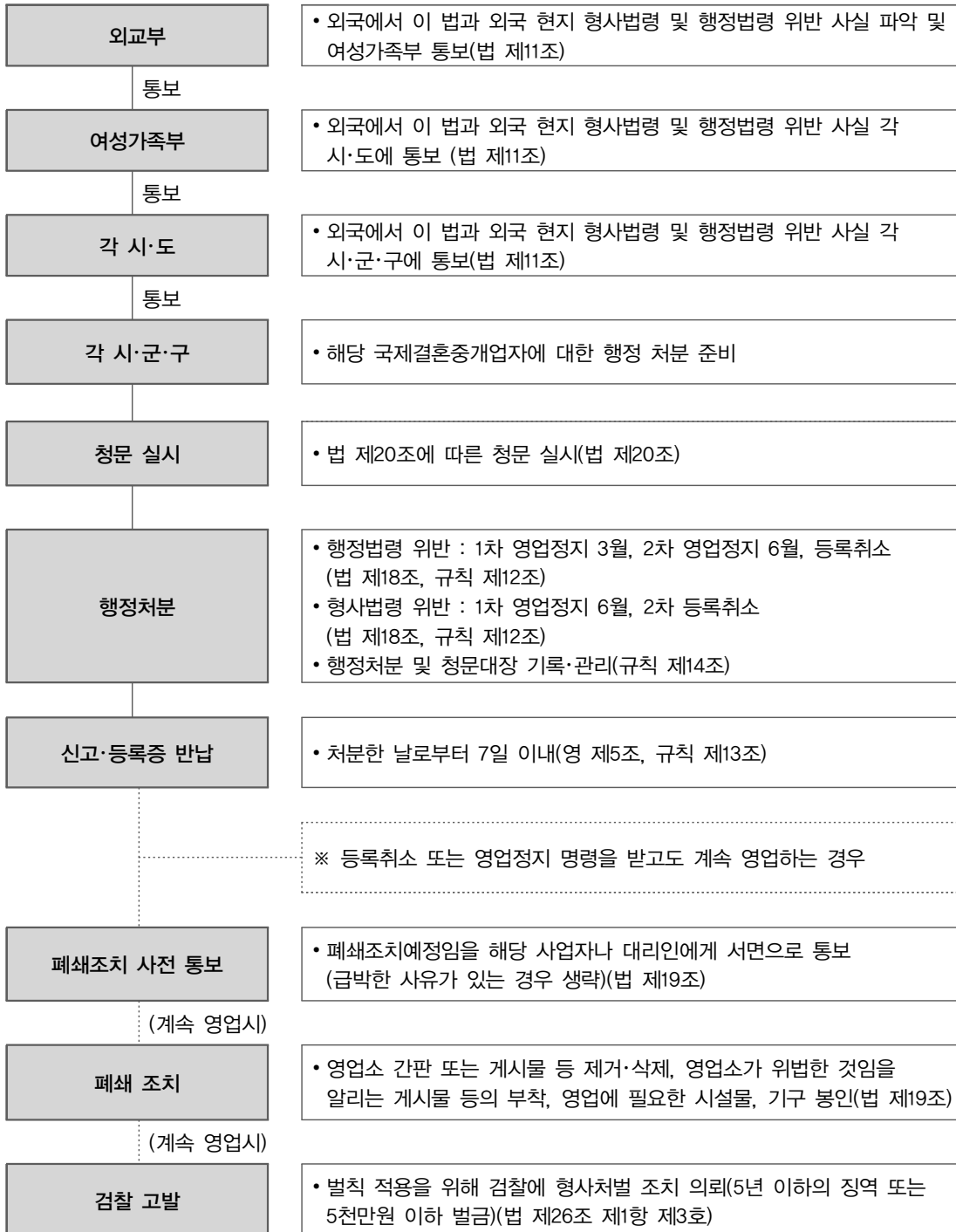
(다) 조치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현지 법령 위반의 범위

- 외국 현지의 “형사” 법령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외국 현지의 “행정”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 통보 내용

-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 등록번호 등 영업정보

■ 여성가족부 및 시·도가 통보해온 외국 현지 행정법령 또는 형사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외국 현지법령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시(영업정지 6월), 2차 위반시(등록취소) 처분함을 서면 통지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참고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별 결혼중개업 허용 여부

❖ 베트남

- 영리목적의 여지가 있는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 금지(가정혼인법)
- 혼인지원활동은 인도적·비영리적인 원칙 준수
- 국제결혼 중매서비스를 금지사업 분야로 명시(기업법의 시행안내에 관한 정부령)

❖ 중국

- 국제결혼 중개업체 설립금지(섭외혼인소개관리 관련 통지)
- 개인의 기만적인 수단 혹은 영리목적으로 국제결혼중개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는公安 기관 및 公상기관과 협조하여 엄격히 단속·금지

❖ 필리핀

- 필리핀여성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중개행위 금지(공화국 법률 또는 우편 주문 신부 금지법)
- 국제결혼 관련 광고·표시 금지
- 필리핀여성과 외국인과 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특정 클럽·협회의 회원으로 모집·가입을 권유하거나 유도·알선하는 행위 금지
-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기를 마치고 벌금을 납부한 후에 즉시 강제 퇴거되며 영원히 필리핀 입국금지

❖ 캄보디아

- 결혼중개업체·중개인·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위장결혼, 강제적 착취나 인신매매·성착취를 위한 사기결혼은 절대 금지

❖ 몽골

- 상업적으로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상업적인 결혼 중개업을 인신매매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몽골 정부는 결혼중개업소 개설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청 및 법인등록청에서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몽골가족법)

❖ 러시아

- 국제결혼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음
- 다만, 결혼중개업체가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기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중개한 경우 법정형이 최대 5년이며, 국외로 이송하는 경우 징역 3년 내지 10년으로 가중처벌(형법)
 - ※ 실제로 결혼중개업체와 같은 단체가 상기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을 징역 8년 내지 15년으로 정하여 가중 처벌

09

표시·광고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조항

- **법** 제12조(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6조(벌칙)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규칙** 제10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의 범위),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주요 내용

- 결혼중개업자의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
- 결혼중개 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 제공 금지
- 결혼중개업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 의무
-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결혼중개 광고(카페, 블로그 등) 금지

(다) 점검시기 및 방법

-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인지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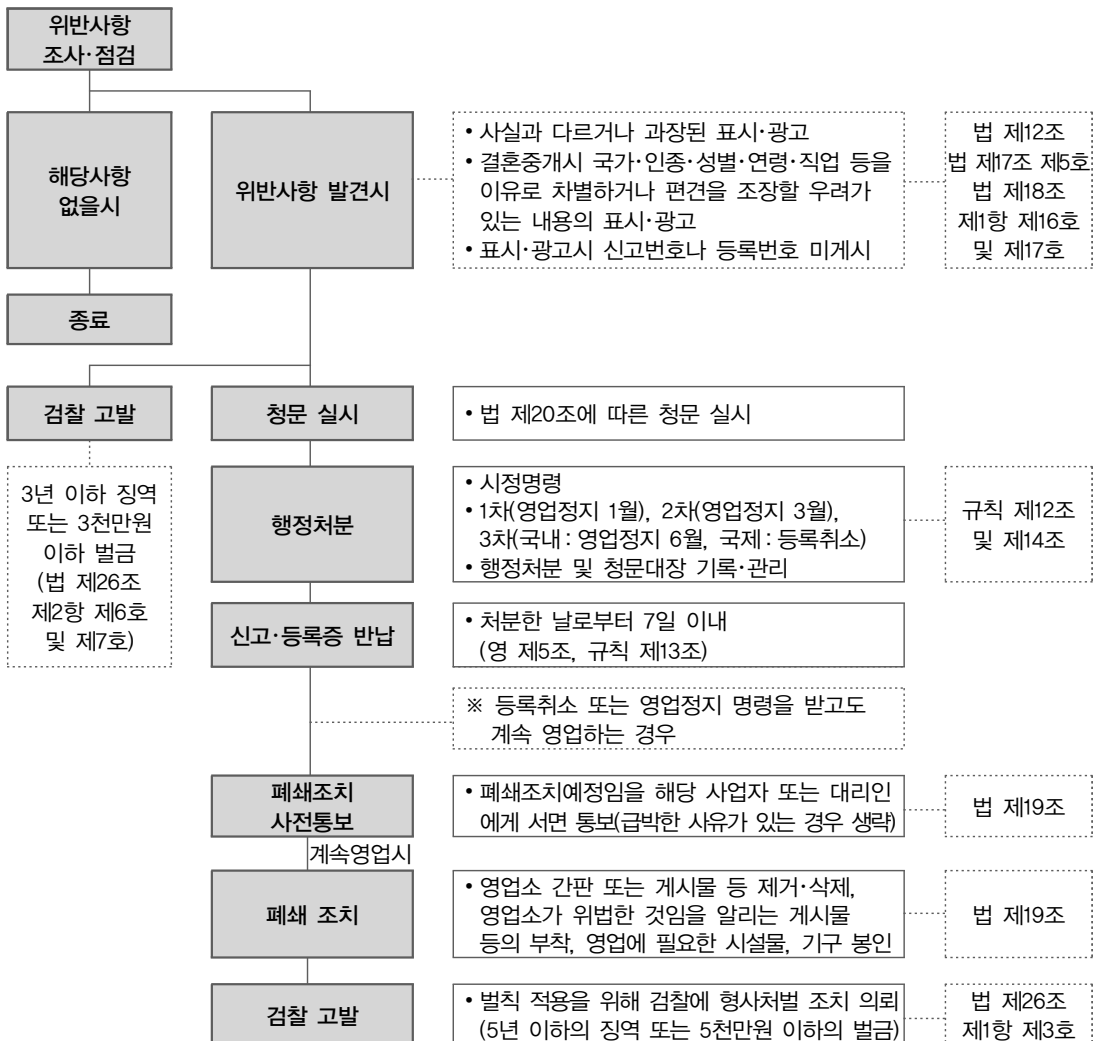
(라)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마) 처분내용

-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의뢰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바) 업무절차도



(사) 업무수행 내용

■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점검

표시

-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

광고

-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개정 법률 시행(10.11.18.) 이후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간판에도 신고·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간판의 경우 재제작할 시에는 신고·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함
- 결혼중개업 이용 소비자의 민원(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를 통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관한 정보 입수시, 우선,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별표 1에 명시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악
-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자가 하는 표시·광고 인지 확인

[별표 1] 〈개정 2012.8.2〉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광고
- 마. 저속하고 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
-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의 민원(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를 통해 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경력, 학력, 직업, 재산 등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관련 서류와 사실 확인을 통해 판단

- 온라인 홈페이지 상의 거짓·과장광고 사례

- 회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회원의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결혼중개업법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2항의 위반

-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의 민원(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표시·광고 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거짓된 정보 제공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의뢰(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

- 법 제26조(벌칙)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12조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2에 따라 1차 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국내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처분함을 서면 통지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실시

- 이후 “청문 실시”, “행정처분 시행”,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반납”,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폐쇄조치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조치” 등의 순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10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6조(벌칙)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및 방법

- 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로 점검 및 후속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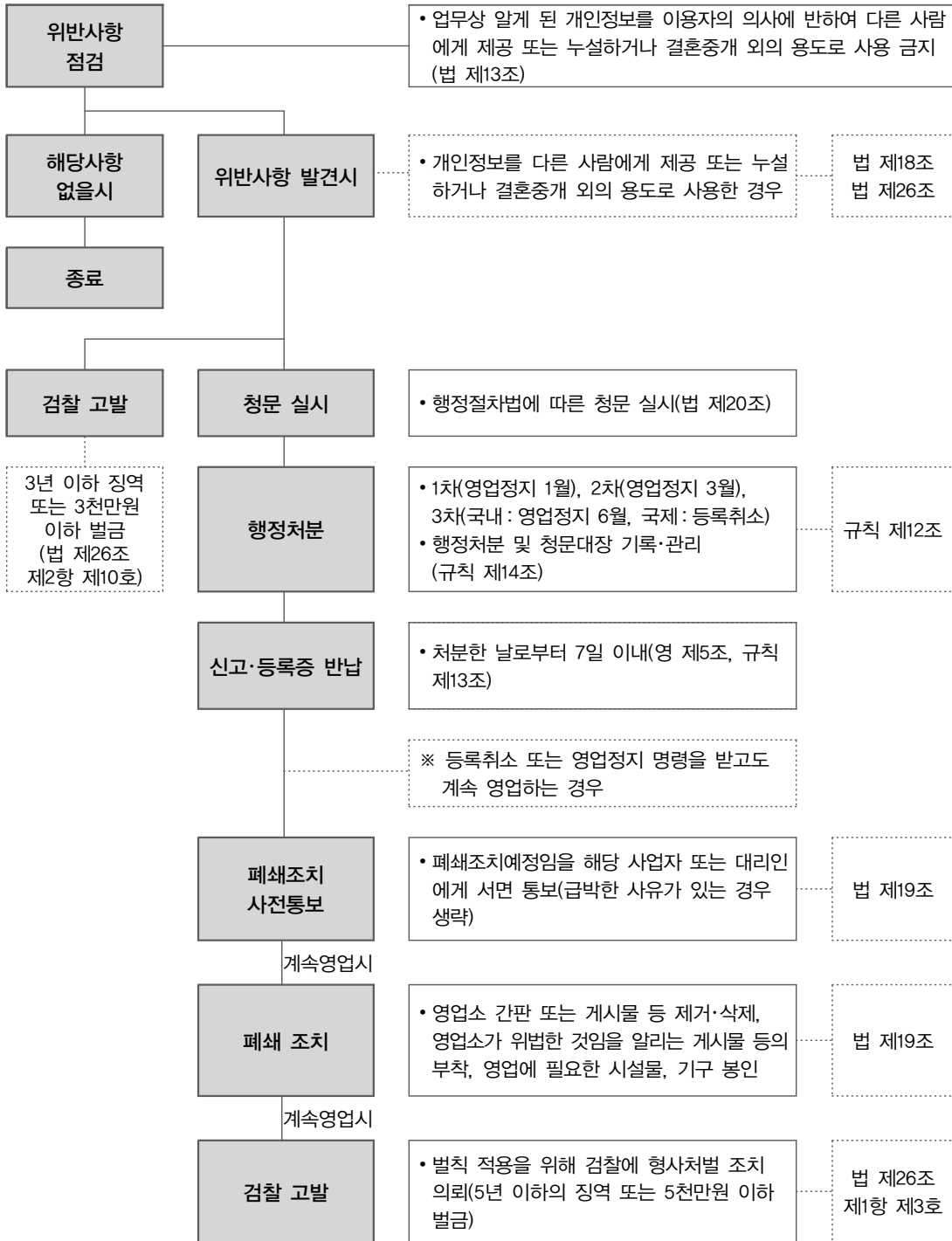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의뢰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결혼중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결혼중개업자가 중개 계약 당사자에 관한 정보 수집 시, 가급적 결혼중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결혼중개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할 시·군·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
-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본인 동의 없이(서명 등) 업체 홈페이지에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결혼중개업법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위반 사항
 - 개인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고-본인 동의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 확보·보관하고 홈페이지 해당여성 사진아래에 “본인동의”라는 문구 삽입 후 게시(지도·감독 시 확인)
-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 제공·누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위반되며 개인이 동의하였더라도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게시를 철회해야 함

■ 개인정보 관련 참고사항(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9.30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처벌 강화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보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됨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법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와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도 개인정보로 판단

■ 결혼중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여부 점검

- 결혼중개업체 관계자의 내부 고발, 피해자의 신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인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관한 정보 입수시, 사실 관계 여부를 우선 파악할 필요

- 내부 고발인 경우, 고발자를 통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내역 등을 입수(고발자 신분 보장에 유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 피해 내역을 확보한 후 후속조치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의뢰(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회원(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벌칙) 제2항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검찰에 고발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형사처벌 의뢰와 별개로 진행)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계획을 서면 통보

- 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 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에 처분함을 서면으로 통지

11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8조(과태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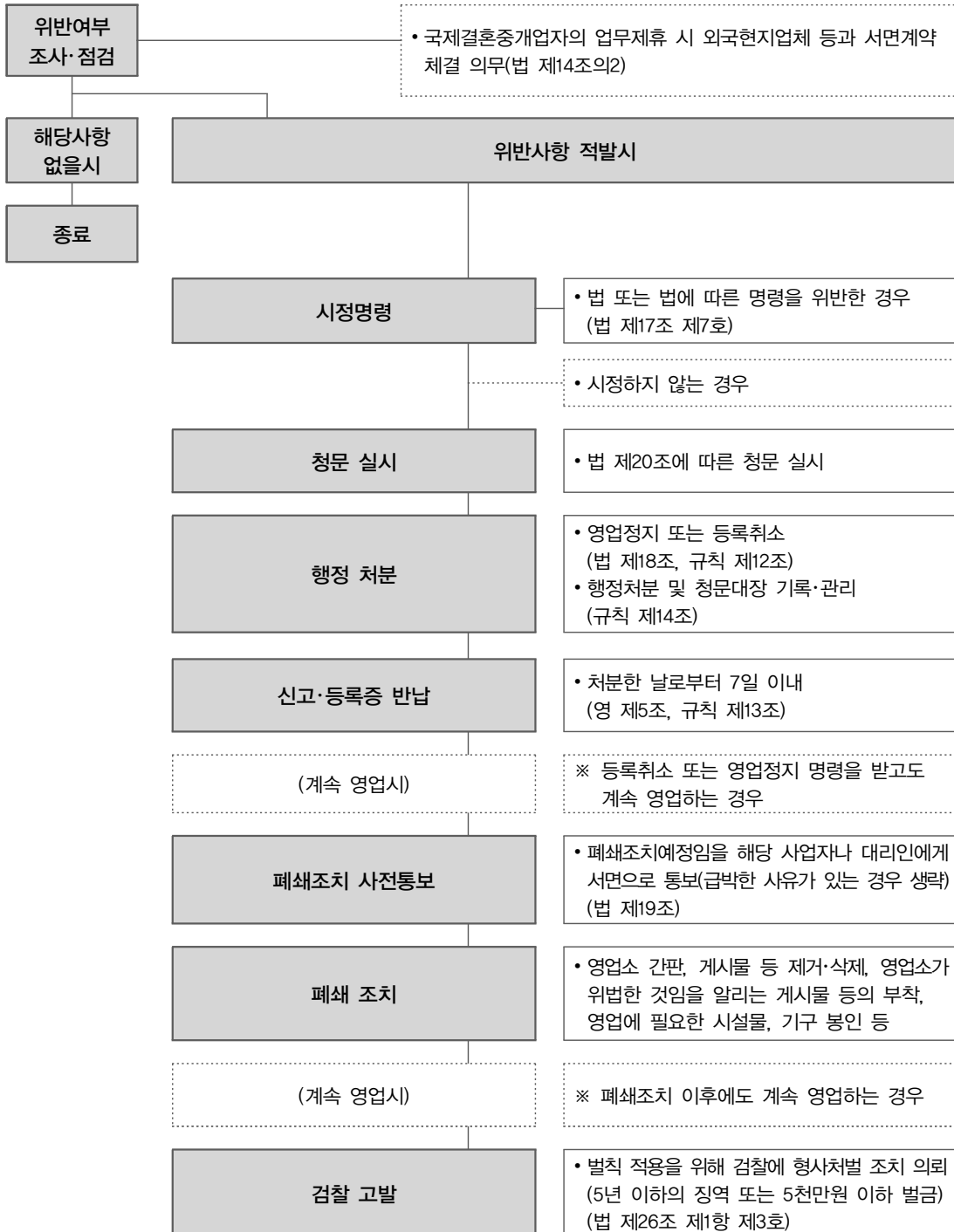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후속 처분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점검 내용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 제휴 시 서면계약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점검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 점검항목 및 방법

- 해당 결혼중개업체 사무소를 방문,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와의 서면계약서 또는 해당 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관련 서면계약서 상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법 제10조)
 - 외국 현지법령의 준수(법 제11조 제1항)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법 제12조 제1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 업무제휴 시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에서 정한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법 제17조(시정명령) 제7호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서면 통보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12

장부 및 대장 비치·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8조(과태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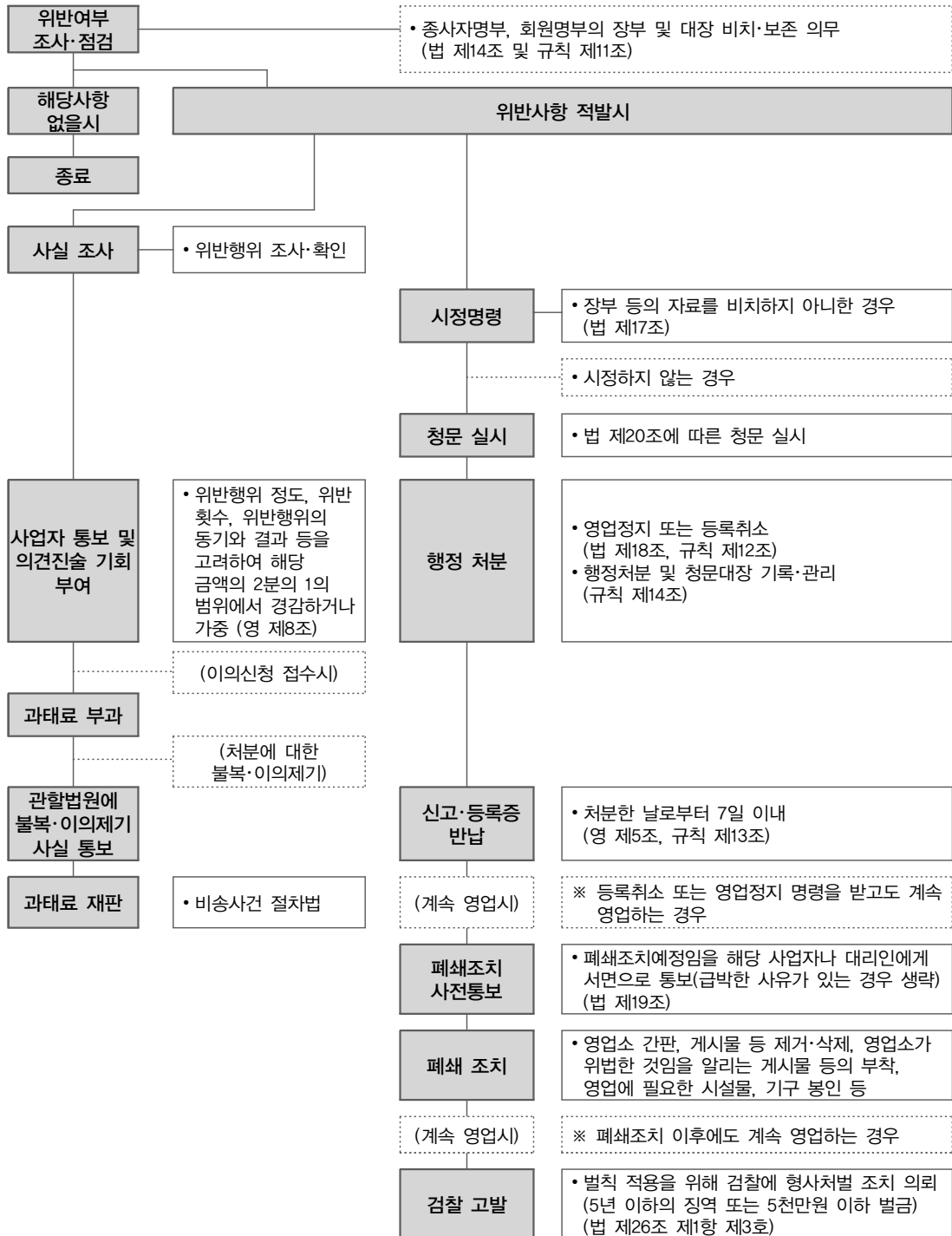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병과)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후속 처분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바) 업무수행 내용

■ 점검 내용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종사자명부, 회원명부 및 대장 작성 및 보존 여부 점검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 점검항목 및 방법

- 중개사무소(영업장)내에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5년간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결혼중개업체 사무소를 방문, 최근 5년간의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작성·비치 여부 실태 조사 또는 해당 명부 사본 제출 요구
 - 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1항 및 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1항, 규칙 제3조(변경신고) 제1항 및 규칙 제5조(변경등록) 제1항에 따라 종사자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 신고·등록 사항에 해당하므로 실태조사시 종사자명부와 변경 신고·등록 사항을 대조하여 법 제3조 및 법 제4조 위반 사실 발견시(종사자 변경 신고·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 시행

■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미작성 또는 5년간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동시 처분

■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개로 진행)

-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및 규칙 제11조(장부 등의 비치)에서 정한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작성 의무 또는 해당 명부 5년간 비치 의무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법 제17조(시정명령) 제5호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서면 통보

■ 과태료 부과(시정명령과 별개로 진행)

-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미작성 또는 5년간 비치 의무 위반은 법 제28조(과태료) 제2항 제3호 및 영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 처분 각 절차별 진행 내용은〈신고 및 등록단계편의 “법 위반 여부 조사·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13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가) 조치근거

- **법** 제24조의3(자본금),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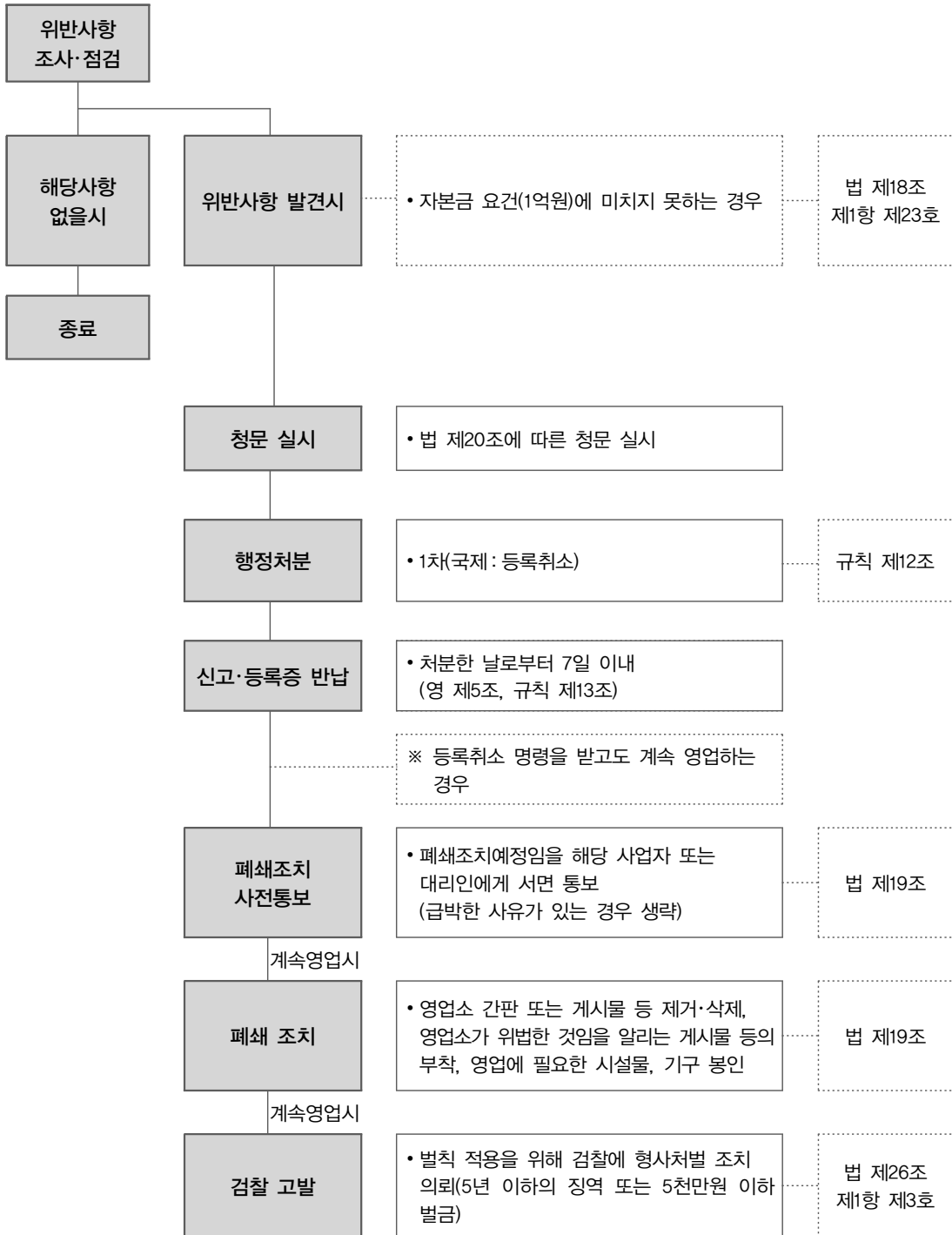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점검 기준일 현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중에 있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등록취소)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점검 내용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1억원) 상시충족 여부 점검
 -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

■ 점검항목 및 방법

- 자본금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재산목록(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및 증빙자료
 - 자본금액 : 1억원(중개사무소별)
 - 해당자산 : 부동산, 동산, 차량, 예금 등
 - 자산평가기준 : 취득가액 원칙
 - 결혼중개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만 인정
 - 일부사용 자산의 경우 지분만 인정(본인 소유 건물은 전체 인정)
 - 신규차량과 중고차량 구입 시 1년간 인정(그외는 자동차세 과표기준)
 - 현금의 경우 법인(법인명의), 개인(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자본금 1억원 상시충족 여부 점검을 위한 결혼중개업체를 방문 입증서류 확인 또는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상시충족 입증서 제출 요구
 - 부동산, 동산 등 당초 자본금 항목 1억원 상시충족 여부 확인
 - ※ 예금의 경우 점검기간 동안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요구(확인)
- 등록취소 후 계속영업 시
 -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편의 “마.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CHAPTER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01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가) 조치근거

- **법**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제28조(과태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8조(과태료의 부과)
- **규칙**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4조(행정처분 및 처분대장)

(나) 점검시기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및 후속 조치(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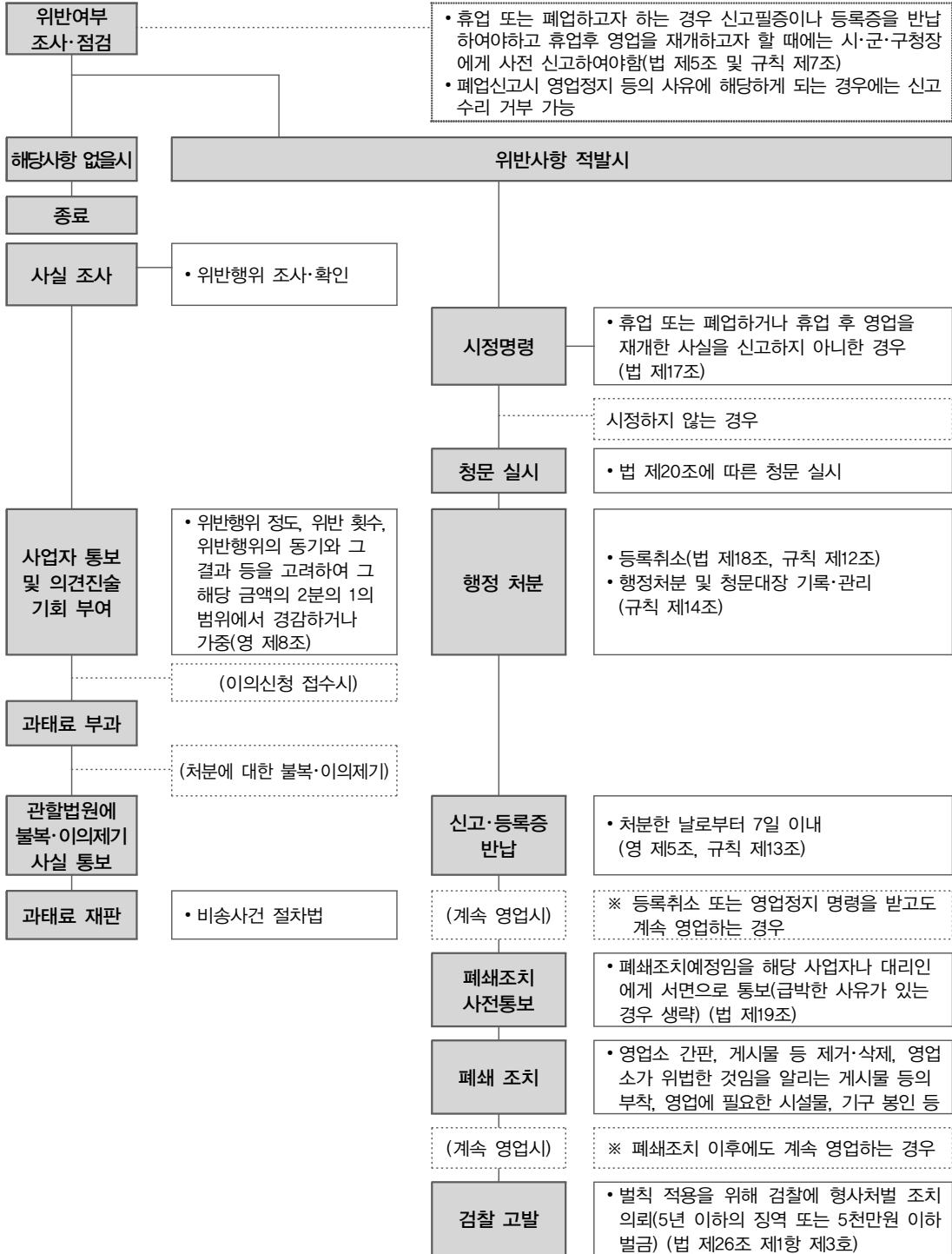
(다) 점검대상

-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

(라) 처분내용

-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병과)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후속 처분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마) 업무절차도



바) 업무수행 내용

■ 휴업·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시 신고 의무

- 휴업에는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제출서류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 휴업 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 재개업 신고서
 -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폐업 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 제출기관 : 관할 시·군·구청
- 폐업의 신고 시 해당 결혼중개업체가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 수리 거부 가능(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않음)
- 영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에서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포함)하여야 함
 - 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인근업체로의 인계 등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해당업체가 제출하도록 함
- 영업 재개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환하되 법 제6조(결격사유) 및 제7조(겸업금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발생 여부 점검

■ 휴업·폐업 또는 영업 재개 미신고 행위 점검 방법

-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내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실태 전수 조사
 - 조사는 가급적 사무소 방문을 통해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유선상으로 1차 조사 후 휴업 또는 폐업이 의심되는 결혼중개업체 또는 휴업 신고하였으나 재개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 휴업기간 종료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것으로 봄

■ 미신고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따른 조치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개로 진행)

- 법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및 규칙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서 정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결혼중개업자에게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법 제17조(시정명령) 제3호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과태료 부과 처분(시정명령과 별개로 진행)

- 미신고 휴업·폐업 및 영업의 재개 행위는 법 제28조(과태료) 제2항 제1호 및 영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 처분 각 절차별 진행 내용은 〈II. 신고 및 등록단계편의 “5. 법 위반 여부 조사·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 각 절차별 주요 내용은 〈II. 신고 및 등록단계편의 “5.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참조

예시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갑 : 폐업 예정 결혼중개업소

- 결혼중개업체 상호명 :
- 업체 소재지 :
- 대표(성명) : 서명 ㉠

을 : 인수 결혼중개업소

- 결혼중개업체 상호명(연락처) :
- 업체 소재지 :
- 대표(성명) : 서명 ㉠

병 : 조치계획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 국가, 약정금액 서명 ㉠

- “갑”은 ()사유로 폐업(휴업)을 신청하면서 “갑”과의 계약·추진하던 “병”의 원활한 국제결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을”과 합의하고 “을”은 필요한 경비, 신상정보 등의 일체의 서류를 인계받았음을 확인하였음.
- “갑”의 결혼중개업소 이용자들의 인적사항 및 습득한 정보 등이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업체 대표로서 개인정보 유출, 계약관계상의 불이행 등에 따른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겠음.

년 월 일

대 표 : (인)

(생년월일 :)

(주소 :)

붙임1. 회원별 세부조치계획

○○○시·군·구청장 귀하

붙임 1. 회원별 세부조치계획내용

[illegible]

CHAPTER

V

FAQ

(자주 묻는 질문)



01

신고·등록 기준 및 절차

Q

국내인을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회원 중에 일부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여부

A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라 하고 있고, 여기서 외국인이라 함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교포라 하더라도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다면 국제결혼에 해당하므로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함

Q

결혼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후 폐업신고를 했다가, 민·형사상의 절차가 진행 중에 신고·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반려 가능 여부

A

법 제6조에서는 형사법령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취소 3년 이내 등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형사 소송 중임을 사유로 신고·등록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음. 또한 민사 소송 결과만으로는 결혼중개업 결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형사처벌로 벌금이상 확정 시 결격사유로 영향을 줌)

Q

결혼중개행위는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작성, 번역, 비자발급 등만 대행하는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결혼중개업체에서 결혼중개 시에 필요한 서류대행만을 하고 있다면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임

Q

결혼중개 사무소를 임차함에 있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임대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증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여부

A

중개사무소 확보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은 자본금에 반영됨으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관계의 사인 간에 직접 체결한 경우는 인정 안함

Q

중개사무소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명시된 건축물에만 설치 가능한지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

Q

결혼중개업에 공동대표를 인정하는지

A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5호의2 서식 등에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공동대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대표는 불가

※ 사업자등록증에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2인 이상의 공동대표로 결혼중개업을 등록(신고)할 수 없음

Q

동일인이 개인사업자(국제)와 법인(국내) 대표로 동시에 결혼중개업체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A

동일인이더라도 결혼중개업법 제3조 및 제4조에 신고·등록 요건만 충족한다면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개인), 국내결혼중개업(법인)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동법에 없음

02

종사자 자격 등 기준

Q

결혼중개사무소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종사자로 신고 여부

Aa

결혼중개업체 종사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제1항 제3호에 의거 중개사무소 별로 신고하게 되어있음

Q

결혼중개사무소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신분으로 커플 매니저 활동을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으로 신고·등록 여부

Aa

결혼중개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으로 신고·등록하거나 다른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로 등재한 후 결혼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또한 프리랜서는 종사자가 될 수 없음

Q

결격사유 조치는 결혼중개업 대표자와 임원 외에 종사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Aa

법 제6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및 임원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여야 함

Q

결격사유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벌금을 받은 후 3년이 다되어 갑니다. 국제결혼 종사자로 종사할 수 있는 지 여부

Aa

결혼중개업 대표나 직원도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경과되면 종사자로 등록하여 종사할 수 있음

03

업무처리 절차

Q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필증(등록증)을 하나만 교부하고 있어 신고필증(등록증)만으로 분사무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Aa

신고필증(등록증)의 소재지 기재 란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주소를 모두 기재(병서)하도록 하고, 소재지를 통해 분사무소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단,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신고필증(등록증)은 각 사무소별로 원본을 게시할 수 있도록 교부

Q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업체가 타 시·군·구에서 영업활동을 했을 때 위법인지 여부

A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타 시·군·구에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분사무소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설이 아닌 1회성 출장에 의한 영업활동이라도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Q

결혼중개업 미신고·무등록 상태에서 광고를 게시하였으나 결혼중개실적이 전무한 경우, 광고를 게시한 사실만으로 결혼중개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혼중개실적 유무는 결혼중개업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

Q

업체 실사점검, 사업자등록증이나 국세청의 폐업 증빙서류로 직권 폐업
이나 직권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Aa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보증보험 (재)가입여부,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요건 확인 및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 처분을 취하여야 함

Q

영업정지 효과는

Aa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 범위에는 신규모집 영업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하였던 회원 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영업정지 사업자는 진행 중인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

Q

영업정지 기간 내 휴업·폐업 신고에 대한 수리가능 여부

Aa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되어 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면,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법
제5조에 휴업·폐업을 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1조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음

Q

결혼중개업법제10조의2 제4항에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신상정보 제공시기가 맞선 전, 맞선장소, 맞선 후 등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Aa

결혼중개업 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는
맞선 전까지 이용자 및 상대방에 제공하여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맞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결혼중개업체 간의 업무제휴에 따른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등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

※ 보존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상정보는 개인정보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결혼중개업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또한, 개인신상정보 등 서류를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결혼중개업체는 회원(이용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해 회원(이용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금고, 이중 철재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야 함



결혼중개업체 운영 시 개인정보 조치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내부관리 계획 수립(상시 근무인원 5인미만의 업체는 생략 가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을 하여야 함. 또한, 모든 결혼중개 업체는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잠금장치 설치를 하여야 함.

※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참고

-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04

자본금 요건 확인

Q

본인 소유 건물의 경우 자본금 산정여부

A

본인 소유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가액 혹은 시가표준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인정

Q

월세보증금도 자본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월세보증금은 임차료 미지급, 임차물 멸실·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전세보증금 인정)

Q

업무용 동산의 인정 범위 여부

A

업무용 동산은 결혼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캐비닛, 소파, 정수기, 냉장고 등은 인정하고, 간판이나 인테리어, 홈페이지 구축비 등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Q

재산목록명세 업무용 동산 구입비 증빙서류는?

A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동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를 인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따라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 인정

Q

업무용 차량의 인정 금액은?

A

대표자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동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 상의 차량 취득금액에서 차량등록원부의 채권가액을 공제한 금액

Q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총액에 대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합계금액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총액 이상인 경우 인정함

CHAPTER

VI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6.]	[본조신설 2014.2.5.]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4.2.5., 2016.12.27.>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2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개정 2010.3.19., 2010.11.17.〉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3., 2016.12.30.>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6.]	<개정 2010.11.17.>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6.12.27., 2017.7.13.>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2이상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		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 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 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 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개정 2010.11.17.>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 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 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 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 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1. 삭제 <2017.7.13.> 2. 삭제 <2017.7.13.> 제6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 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3.2.>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지 제7호의2서식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1.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2.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본조신설 2012.8.2.]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3.3.22., 2015.2.3.>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죄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7.12.> [제목개정 2010.11.1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6.12.20.>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1.16.> [제목개정 2010.11.16.]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6.1.)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 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방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7.23.>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0.>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2016.12.30.>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6.]	제9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현지의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의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16.>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상호·등록번호 등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	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2010.11.16., 2013.3.23., 2013.9.1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3.3.23.> [제목개정 2010.11.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		제10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17.]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 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1.16., 2015.8.3.>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5.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6.>	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 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 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 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 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 시·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 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 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 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5.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개정 2015.2.3.〉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제23조 삭제 〈2010.5.17.〉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 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 : 3만원 나. 변경신고 : 없음 다. 삭제 〈2015.8.4.〉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 : 3만원 나. 변경등록 : 없음 다. 삭제 〈2015.8.4.〉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 [제목개정 2015.8.4.]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3.]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3.2.>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3.2.>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6.3.2.>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1.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제목개정 2010.11.16.]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3.27.> 1. 법 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7.3.27.> 4.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3.22.> 3의2. 삭제 <2013.3.22.> 4. 삭제 <2013.3.22.> 5. 삭제 <2013.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제시하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7.>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제9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조의2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신고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부칙〈제8688호, 2007.12.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9765호, 2009.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부칙〈제20815호, 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제22076호, 2010.3.15.〉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제21호, 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제8호, 2010.11.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4조제1항 후단·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22494호,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제23970호, 2012.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의 결혼중개계약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호, 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40호, 2013.9.16.〉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호, 2014.2.5.〉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호, 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부칙〈제10301호, 2010.5.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128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446호, 2013.3.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제24755호, 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95호, 201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호, 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6호,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제11672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471호, 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제27960호, 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부칙〈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12078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한다. 부칙〈제1317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4060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4405호, 2016.12.20.〉 (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2017.12.12.,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6호, 2017.7.13., 일부개정)
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부칙〈제14441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00호, 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203호,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		

[별표] <개정 2015.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100만원

[별표 1] <개정 2012.8.2>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시행규칙 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광고
- 마. 저속하고 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
-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별표 2] <개정 2015.8.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국내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 국제결혼중개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국내 : 영업소 폐쇄 국제 : 등록취소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국내 : 영업소 폐쇄 국제 : 등록취소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 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 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 : 영업정지 1년 국제 : 등록취소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 영업정지 1월 국제 : 등록취소	국내 : 영업정지 2월	국내 : 영업정지 3월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국내 : 영업정지 2월 국제 : 등록취소	국내 : 영업정지 3월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7.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0조의 4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제1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국내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국내 : 영업정지 1년
9.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국제 : 영업정지 3월	국제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0.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국제 : 영업정지 3월	국제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1.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국제 : 영업정지 1월	국제 : 영업정지 3월	국제 :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국제 : 영업정지 3월	국제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3. 법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국제 : 영업정지 3월	국제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15호	국제 : 영업정지 6월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3월 (행정법령 위반)	국제 : 등록취소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월 (행정법령 위반)	국제 : 등록취소 (행정법령 위반)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6.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7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8호	국제 : 영업정지 3월	국제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1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0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 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1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21.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 영업정지 6월 국제 : 등록취소
22.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3호	국제 : 등록취소		
2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4호	국내 : 영업정지 3월 국제 : 등록취소	국내 : 영업정지 6월	국내 : 영업소 폐쇄

[별표 3] <개정 2012.8.2>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강의	1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인권보호	강의	1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규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강의	1
결혼중개업 실무	- 상담 이론 및 실무	강의	1

[별표 4] <신설 2012.8.2>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제도	- 소비자보호 관계 법규 해설 -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선택 운용 (사이버교육, 집합 교육, 교재 배부)	1
국제혼인 관련 제도	- 국제혼인 관련법규 해설 -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정착단계 관련법규 및 제도 소개		1
국제결혼 가족상담	- 성공 및 실패사례 - 질의응답		1

비고 : 교육방법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13.>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 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사무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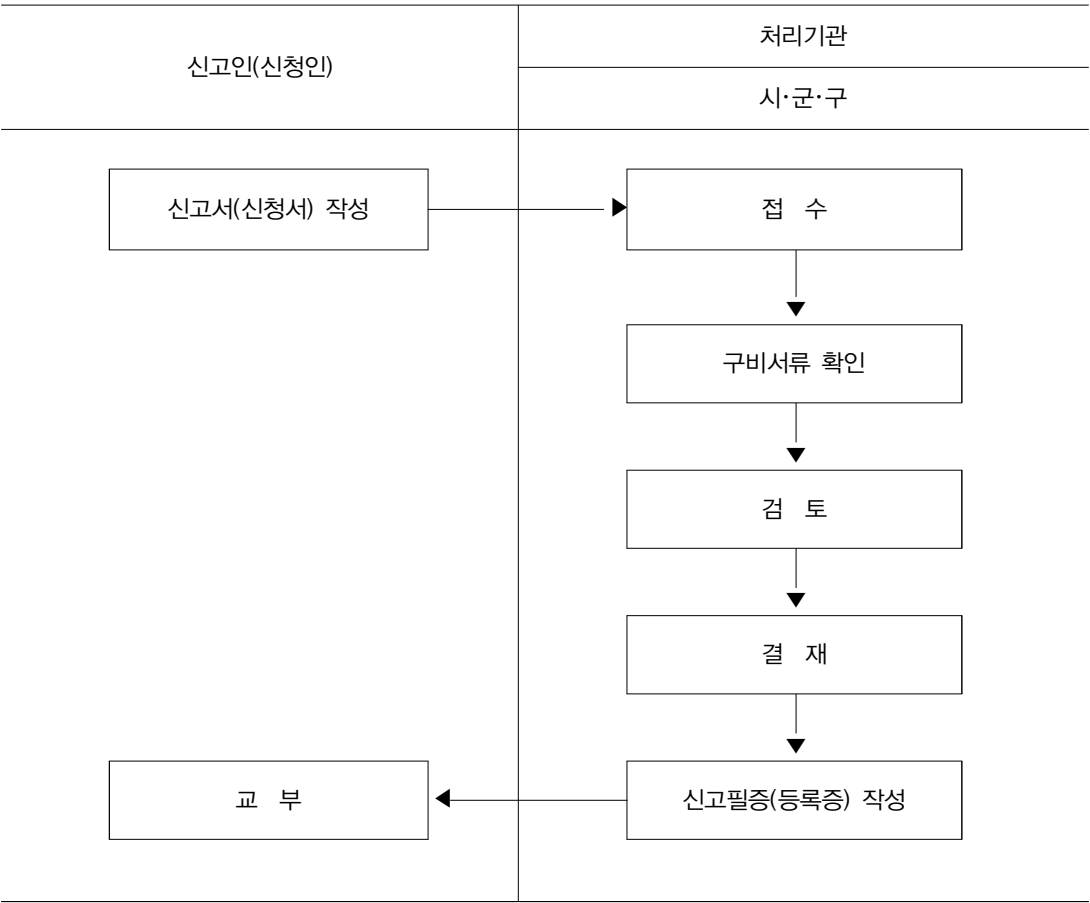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인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3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7.12.>

제 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1. 상 호 명 :
2. 대 표 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관리대장						
① 신고·등록관청			② 최초신고·등록일자			
③ 신고·등록번호			④ 교부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⑤ 상호		⑥ 사무소 대표자 성명			
	⑦ 소재지		⑧ 전화번호			
	⑨ 휴업일자		⑩ 휴업사유			
	⑪ 폐업일자		⑫ 폐업사유			
대표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⑮ 법인명		⑯ 법인등록번호			
	⑰ 소재지		⑱ 전화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임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⑲ 교육기관	
					⑳ 교육수료일자	
신고·등록사항 변경내용						
행정처분내역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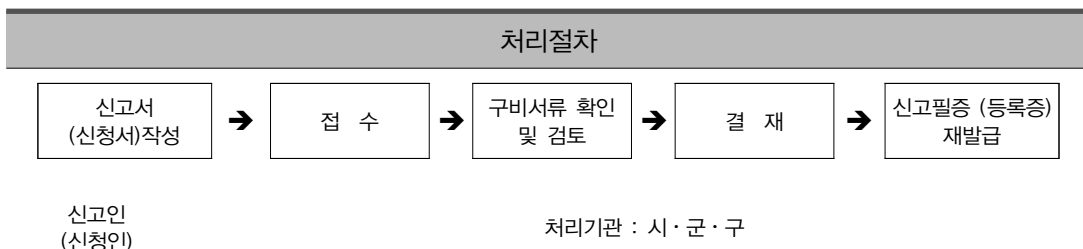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신청인)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7.13.>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2.8.2〉

재 산 목 록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재산목록의 명세					
번호	구분	용도	종류 및 수량	금액	증명방법
1	업무용 부동산				
2	업무용 동산				
3	업무용 차량				
4	현금 및 예치금				
5	기 타				
	합 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실과 틀림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및 업무용 차량 등은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 단, 현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입합니다.
-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칸을 추가하거나 별지에 따로 기입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증거서류를 별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7.12.>

제 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1. 상 호 명 :
2. 대 표 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소 재 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혼 중개 사무소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사유	※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
의
의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7.12.>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결혼중개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	
	사무소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기간	~ (일간)	
	폐업일		
	재개일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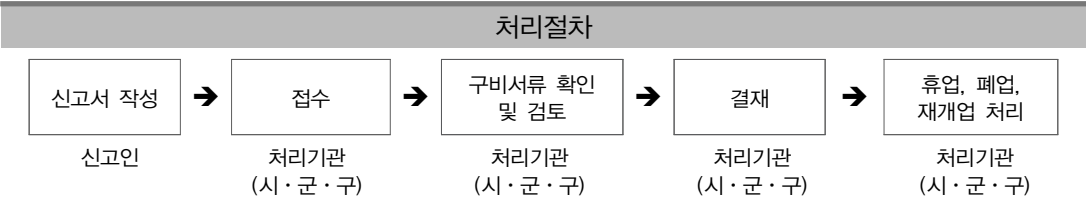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대표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3.9.16>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회대상자 (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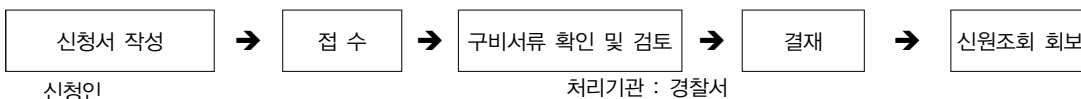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3. 구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4.2.5>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조회결과	
	처분일자	처분내용
1. 성폭력 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위반 범죄경력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위반 범죄경력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위반 범죄경력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 관할 경찰서 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름		
3. 아동학대 가. 구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나.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경력		
4. 성매매 알선 및 강요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5.8.4.>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앞쪽)

등록번호		발급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도로명까지)		
신상정보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초혼 재혼([]이혼, []사별) 재재혼([]이혼, []사별) 자녀([]유, []무)		
	건강상태		
	직업(직종)	직장명	
	범죄경력		
	기타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동의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시 유의사항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증절차를 이행한 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나.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합니다.
-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정신건강 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이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합니다.)
-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합니다.)
- 마.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작성방법〉

- 가. “인적사항” 란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주소는 동단위 까지만 기재합니다.
- 나.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란에는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다. “건강상태” 란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그 밖에 결혼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 라. “직업”란에는 직종과 직장명을 기재합니다.
- 마. ‘범죄경력’ 란에는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정보’ 란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정보 중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2.8.2〉

서면 동의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국적의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증명서류 및 번역본을 제공받았으며, ○○○○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7.12.>

종 사 자 명 부

직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담당 업무	학력	주요 경력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교육훈련 사항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I. 결산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8.4.>

결혼중개 회원명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2.8.2〉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신 : 업체명 대표자 (인)

제 목 년도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 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20 년도 국제결혼중개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20 년도 국제결혼중개실적			
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별 혼인중개실적			
상대방 국적별	이용계약(건수)	성혼(건수)	성혼율(%)
2.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별 혼인중개실적			
상대방 국적별	이용계약(건수)	성혼(건수)	성혼율(%)

210mm×297mm[백상지 80g/m²]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2〉

[illegible]

참고자료 2

결혼중개업체 관리 법령 총괄표

※ 음영(진한 부분)은 「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됨.

구 분 〈근거법령〉	시정 명령 (법 제17조)	영업정지/등록취소(법 제18조)			과태료 (법 제28조)	형사처벌 (법 제26조)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미신고 영업 〈법 제3조 제1항〉 (국내)		폐쇄조치 〈법 제19조〉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미등록 영업 〈법 제4조 제1항〉 (국제)		폐쇄조치 〈법 제19조〉	-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거짓 등 부정 신고 〈법 제3조 제1항〉 (국내)		폐쇄조치 〈법 제19조〉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거짓 등 부정 등록 〈법 제4조 제1항〉 (국제)		등록취소	-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변경사항 미신고 〈법 제3조 제1항〉 (국내)	●				300만원		• 시정조치와 과태료 병과
• 변경사항 미등록 〈법 제4조 제1항〉 (국제)	●				300만원		• 시정명령과 과태료 병과
• 미신고 휴업·폐업 또는 미신고 영업 재개 〈법 제5조〉 (공통)	●				100만원		• 시정명령과 과태료 병과
• 결격사유 해당 〈법 제6조〉 (공통)		(국내) 폐쇄조치 (국제) 등록취소					결혼중개업법, 형법, 아청법 등 위반 벌금 이상 종료후 3년 미경과
• 겸업금지 위반 〈법 제7조〉 (공통)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내) 영업정지 1년 / (국제) 등록취소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 사업, 해외 이주알선업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II. 신고 및 등록단계

III. 운영단계

IV. 휴업 또는 폐업 단계

V. FAQ(자주 묻는 질문)

VI. 참고자료

구 분 〈근거법령〉	시정 명령 (법 제7조)	영업정지/등록취소(법 제8조)			과태료 (법 제28조)	형사처벌 (법 제26조)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미제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미제시 (법 제8조) (공통)	●				100만원		• 시정명령과 과태료 병과
• 명의대여 금지 위반 (법 제9조) (공통)		(국내) 영업정지 1월 /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2월	(국내) 영업정지 3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서면 계약서 미작성 (법 제10조 제1항) (공통)		영업정지 1월	(국내) 영업정지 2월 /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계약서 미교부 (법 제10조 제2항) (공통)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계약서 5년 보존 위반 (법 제10조 제3항)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국제결혼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 번역본, 관련 증빙서, 혼인관련 서류
• 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법 제10조 제4항) (공통)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1년			
•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 미제공 또는 거짓된 신상정보 제공 (법 제10조의2 제1항) (국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구 분 〈근거법령〉	시정 명령 (법 제17조)	영업정지/등록취소(법 제18조)			과태료 (법 제28조)	형사처벌 (법 제26조)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과장된 신상정보 제공 또는 중요사항 누락 〈법 제10조의2 제1항〉 (국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통역·번역서비스 미제공 〈법 제10조의3 제1항〉 (국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결혼중개계약서,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 혼인관련 서류 등 5년 보존 위반 〈법 제10조의 4 제1항〉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 (국제)
• 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행위 또는 부당한 금품 징수 행위 〈법 제10조의5〉 (국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외국 행정법령 위반 통보 〈법 제11조 제2항〉 (국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외국 형사법령 위반 통보 〈법 제11조 제2항〉 (국제)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 거짓·과장되거나 직업 등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 인신매 매나 인권침해 할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 〈법 제12조 제1항〉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구 분 〈근거법령〉	시정 명령 〈법 제17조〉	영업정지/등록취소〈법 제18조〉			과태료 〈법 제28조〉	형사처벌 〈법 제26조〉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거짓된 정보 제공 〈법 제12조 제2항〉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표시·광고 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미포함 〈법 제12조 제3항〉 (공통)	●						
• 미신고(미등록)결혼 중개업자 결혼중개 광고 〈법 제12조 제4항〉 (공통)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미성년자 소개금지 등 〈법 제12조의 2〉 (국제)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개인정보 보호 위반 〈법 제13조〉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과
• 장부·대장 미비치 〈법 제14조〉 (공통)	●				100만원		• 시정명령과 과태료 병과
• 자료 제출·보고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법 제15조 제1항〉 (공통)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조사나 검사 기피, 방해 〈법 제15조 제1항〉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구 분 〈근거법령〉	시정 명령 〈법 제17조〉	영업정지/등록취소〈법 제18조〉			과태료 〈법 제28조〉	형사처벌 〈법 제26조〉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시정명령 위반 〈법 제17조〉 (공통)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3개월 범위내 시정 명령
•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법 제24조의3〉 (국제)		등록취소					
• 보증보험 미가입 〈법 제25조〉 (공통)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	(국내) 폐쇄조치			
• 폐쇄조치에도 영업 지속 〈법 제26조 제1항〉 (공통)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할 경우
폐쇄조치 ⇒ 폐쇄조치에도 영업할 경우 검찰고발

참고자료 3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2017. 9.21기준 / 114개국)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7)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52)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	미국
중남미 (27)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4)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 외교부 영사지원팀에 확인 바람

- 당사국 확인 사이트 : www.hcch.net/en/instruments/status-table/?cid=41

참고자료 4

결혼중개업 관계법령 총괄

1.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거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소액·다발의 특성을 띠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력·교섭력 등이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원의 소송 절차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규제하는데 한계
-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의 보장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1987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명시하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소비자피해 보상행정 업무를 담당
 - 2006.9.27,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
-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소비자기본법 제78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조사권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16.10.26)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결혼중개업의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 결혼중개업(1개 업종)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잔여 횡수/총횡수)+가입비의 20% 환급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 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가입비의 80%×(잔여횡수/총횡수) 환급	* 횡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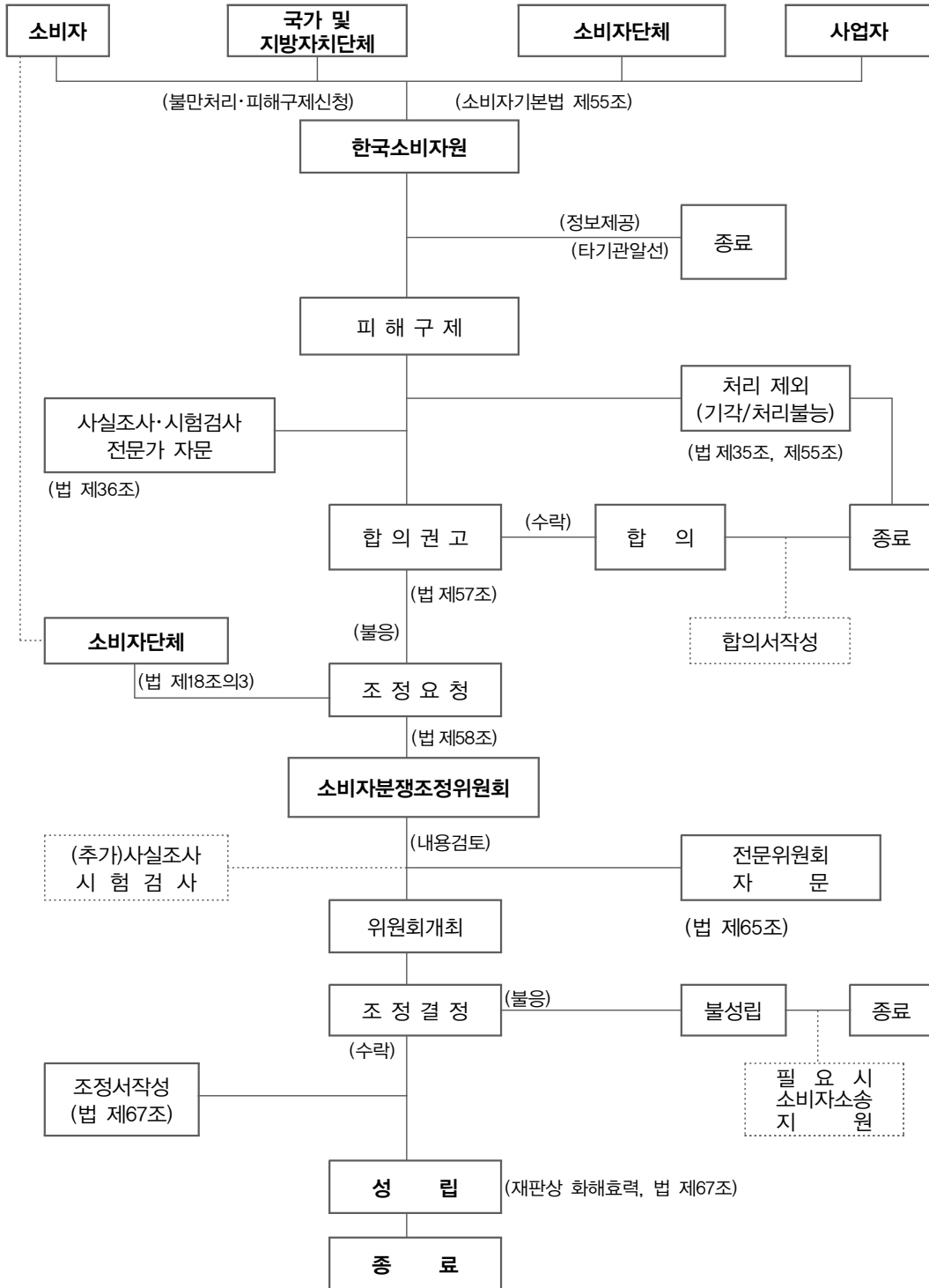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중도 계약해지 - 사업자의 귀책인 경우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손해배상 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 중개 다시 이행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 ○ 총비용 전액 소비자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14.12.19)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계약의 해지와 가입비 환불기준이 마련됨
- 또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도 개정('14.9.19)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환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로 3단계의 상담·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먼저, 소비자가 국내·국제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이 생길 경우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 상담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피해구제 대상으로 접수되며, 처리 담당 직원이 사실조사를 한 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데 이 때,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종결처리
- 만약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 집단분쟁 조정신청
 - 의뢰 또는 신청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요청서·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 되어야 함. 따라서 결혼중개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 결혼중개업체에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되고 20명 이상에게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으로 접수가 가능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 공고

〈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업무 절차도



【특수거래 관련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 현재 많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성업 중에 있으며 회원가입 또한 회사 홈페이지상이나 전화권유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영업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1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상,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
-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 부당약관과 관련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목적(제1조)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
- 약관의 정의(제2조)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제3조)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함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참고자료 5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7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 및 **표준계약서(붙임)**은 ○○ 회사(국내결혼중개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국내결혼 관련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계약서·약관의 명시·교부 등)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예고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예고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2.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3. 회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 변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0개월**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총횟수의 만남을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이 회사와 총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0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동안 총0회의 만남을 갖습니다. 회원이 회사와 횟수의 정함이 없이 총일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원은 회사의 소개로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이성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② 제7조 제1항에서 만남의 총횟수(횟수제) 또는 계약기간의 총일수(기간제)는 제11조의 가입비 환급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만남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관련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 후 회사에 가입비 금○○○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소개한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9조(회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3. 회원간의 결혼

4.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2006. 12. 22. 본호 삭제)

3.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4. 회원이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단, 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회원이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만남보류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만남보류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7조 제3항의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③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 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 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합니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붙임】 표준계약서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갑 (가입자)**

회원성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을 (사업자)

상 호 : 국내결혼신고번호 :
 사업장주소 :
 대표자성명 : (인 또는 서명)

갑과 을 간의 회원가입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계약일 : 년 월 일

1. 회원가입비는 _____ 원입니다.
 * (성혼사례금이 있는 경우) 성혼사례금은 _____ 원입니다.
2. 횡수제 : 을은 갑에게 _____개월(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_____회 제공합니다.
 기간제 : 을은 갑에게 _____개월(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횡수의 제한없이 제공합니다.
3. 계약해지 시 회원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급합니다.

※ 사업자(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횡수제) 회원가입비×(잔여횡수/총횡수) + 회원가입비의 20%
 (기간제) 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

※ 사업자(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환급기준

1. 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80%
2.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횡수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횡수/총횡수)
 (기간제)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

4.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합니다.
5. 을은 갑에게 본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본을 교부합니다.

참고자료 6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5호
(2014. 9.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국제결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요금의 변경)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3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5. 회원이 제7조 제3항에 의한 안내직원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거나 국제결혼 상대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14조(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알려 주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됐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회원의 동의를 받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사업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결혼중개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회원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사업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해결) 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붙임1】 회원가입계약서

회원가입계약서**갑(국제결혼중개업자)**

사업자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을(국제결혼중개 의뢰인)

회원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갑과 을 간의 회원가입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계약일 : 년 월 일

1.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_____이다.
2. 갑은 을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을은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를 갑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지급일			
금 액	원	원	원
총			원

4. 맞선 상대방의 조건

가. 나이

나. 학력 및 경력, 직업

다. 기타 _____

5. 기타 특약사항

【붙임2】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체재일정	____년 ____월 ____일 ~ ____년 ____월 ____일 (____박____일)		
맞선 상대방	☐ 인원 : 총 ____명 맞선예정 (최소 ____명 이상) ☐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 별지로 첨부 가능		
건강검진 항목			
항공편	○ 항공편명 및 시간		
숙 식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결혼식 및 신혼여행			
총비용 세부내역	구분	서비스내역	금액
	기본서비스 내역 및 비용	항공료, 철도 등 운임	원
		숙식비용	원
		맞선비용	원
		통역비용	원
		가이드비용	원
		결혼식비용	원
		신혼여행비용	원
		서류진행비용(번역비 등)	원
	개별계약 내역 및 비용		원
		원	
중개수수료		원	
총액		_____원	
기타 특약사항			

참고자료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1호, 2016.3.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3.22.>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2.17.>]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2.17.>]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1조 삭제 <2010.3.22.>

제22조(의견 진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10.3.22.]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신설 2012.2.17.>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2.2.17.]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 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 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7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7조의2(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

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9조의2(협의회의 자원)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0조(적용 범위)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2.]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1조(인가·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1조의2(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6장 벌칙 <개정 2010.3.22.>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0.3.22.]

부 칙 <제3922호, 1986.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4515호, 1992.12.8.>

①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 칙 <제5491호, 1997.12.31.> (한국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6459호, 2001.3.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108호, 2004.1.2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 칙 〈제7491호, 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88호, 2006.9.27.〉 (소비자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 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 〈제8632호, 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4 까지 생략

⑧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0169호, 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9 까지 생략

⑤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1 부터 ⑧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제10474호, 2011.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25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840호, 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41호, 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8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	1999.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9호
개정	2001. 8.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개정	2008. 6.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0호
개정	2009. 8.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45호
개정	2011. 9.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09호
개정	2012.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0호
개정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I. 목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A사가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영업실적등 공개상장여건 충족여부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없이 공개상장되어 5,000원권 주식이 6만원선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정사업과 관련된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 ○○년 ○월, 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출판사 중앙고시연수원”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앙고시연수원”이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학원인 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남”이라는 상호의 사업자가 국내유명 재벌그룹인 “제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자신을 “한남제일” 또는 “제일한남”이라고 표시·광고하여 마치 제일그룹의 계열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가. “가격”이라는 용어의 사용

-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격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당해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아래와 같이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판매가격○○원, 요금○○원, ××료○○원 등

- (2)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입하는데 단지 권장 또는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희망소매(희망소비자)가격○○원, 권장소매(권장소비자)가격 ○○원, 추천소매(추천소비자)가격○○원

- (3) 제조업자 등이 위(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과 동일한 상품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지역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1,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A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1,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희망소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가격의 비교

아래 각 호의 1에서와 같이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1)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상품과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A상품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A” 드디어 750원 인하

750

↑

1,500

(2) 시가(실제거래가격)와의 비교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A상품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700원,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의 시가가 800원, 동일지역내의 일부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시가 1,000원 → 당첨판매가 700원

700

↑

1,000

(3) 위 “가-(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과의 비교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의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실제 희망소매가격 등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됨

【예시】

- A상품의 희망소매가격은 1,000원, 할인특매가격은 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1,500원 → (할인특매가격) 500원
 - 1,000원 → 500원

(4)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실제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시】

-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참고】

- 종전거래가격 : 당해사업자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중 당해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시 가 :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사업자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 희망소매가격 : 당해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또한 실제의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

다. 중고품, 하자품, 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

중고품,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중인 것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여 당해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단, 육안으로 보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중고품이 아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신품의 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중고품등)이 현저히 저가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 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시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되며,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할인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할인율 산출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다.

- (2)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3) 실제로는 조약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4)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5) 일부상품 또는 일부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 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 (6)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7) 할인특매실시기간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8)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덩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9) 엮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되며, 재고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0)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11)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12)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13)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예시】

-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3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1일 또는 2일정도 판매할 재고밖에 없으면서 당해 상품에 대해 할인특매를 실시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 ~ 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용품은 50% 할인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이 50%로 할인특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 가격인하”라고 표기함으로써 최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할인특매인 것처럼 하는 경우

마. 할부판매가격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부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아래와 같이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1) 실제의 할부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판매가격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2) 할부금리를 표시·광고하지 않고 할부액만 표시·광고함으로써 할부판매가격과 현금판매가격이 동일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양 가격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표시·광고행위

【예시】

- 어떤 사업자가 “특가 80,000원, 계약금 20,000원, 매월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라고 표시·광고하여 마치 현금판매가격 80,000원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매월 3,500원, 월부가격 84,000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월부가격 84,000원의 지불방법이 월 3,500원씩 24개월 균등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21,000원, 매월 3,500원씩 18회 균등불로 판매하는 경우

【참고】

- 할부판매가격 :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 판매업자가 구입자로부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 이상 분할

하여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입자가 당해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판매업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의 총액을 말함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 실재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라.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마.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실재는 콩기름이나 들기름등 기타 식용유를 섞어서 판매하면서 “참기름”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재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50% 실크(Silk)/ 50% 레이온(Rayon)”등으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여러 개의 요소 또는 재질이 합성되어 제조된 상품에 있어서 그중 주된 요소 또는 주된 재질이 아닌 부된 요소 또는 부된 재질을 가지고 상품명으로 함으로써 당해 상품이 마치 상품명으로 표면에 내세우는 부된 요소 또는 부된 재질만으로 제조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산딸기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재는 산딸기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하거나 단지 산딸기맛의 향만 들어있는 경우
(이 경우 “산딸기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라.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휘발유 1l로 〇〇km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시내에서 〇〇km, 고속도로상에서 〇〇km, 평균주행거리 〇〇km” 등으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은 “당해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고려된다”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도 “〇〇효능을 미국정부기관이 공인”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가.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떤 냉장고의 실내용적은 “250 l”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냉장고의 용량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300 l”를 기준으로 하여 “300 l 형 신모델상품 개발”이라고만 표시·광고하여 마치 내용적 300 l 형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포장 용기상 표시용량은 “20kg(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내용량은 “20kg미만”인 경우
- 냉방기나 온방기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5평”인데도 “24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최근에 제조되거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8.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설비” 또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일본 A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기술연수한 사실을 “일본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9.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자연, 순수 등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반자동”을 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 자연 : 날것으로서 혼합물·첨가물이 없고 냉장·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 순수 : 첨가물이든 영양소이든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물, 화학사료, 잔류농약 등을 실질적으로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리, 냉기, 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언어나 문자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당해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이 국산품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체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체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국가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바.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사.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 영어, 일본어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당해상품이 마치 미국산 또는 일본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외국의 유명상표·제조업체로고·제품디자인·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여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조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이라고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강화도에서 생산된 돛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돛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참고】

-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광고수단) : 외국문자·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 사업자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11.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자가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등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년간 보증”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당해기간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 또는 A/S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12. 용기, 포장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실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중량이나 부피가 가격결정 또는 상품선택에 있어 중요한 상품에 있어 실내용물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외형포장은 내용물에 비교해서 현저히 크게(실내용물 크기의 2배이상)하여 판매하는 경우
- 기히 포장이 되어 개봉을 하지 아니하고는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품(선물용케이크, 화장품등)을 팔면서 용기의 밑부분을 위로 볼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용량이 용기의 외형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

13.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당해 상품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라.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마.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바.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여러 부문별로 수상자가 있는 “World Beer Cup Festival”(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American-Style Lager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부문을 명시하지 않고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세계제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을 가지고 '특허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용기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폭발적,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동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면서 소금 함량이 높아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 철분결핍에 의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다고만 광고함으로써 광고된 약이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안전과 관련되는 수송기기, 일반산업기기 광고 등에서 특정인의 체험기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강유용성을 주장하는 건강관련용품 광고에서 안전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유독가스차단용 방독마스크제품 광고에 있어 화재시 사망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를 차단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비만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시에는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결과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류등 생활용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등 이용시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이용(사용)방법,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가. 허위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
 -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결과만으로 자기가 제조·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조·판매하는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물에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라.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시】

-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커피를 적당량 섭취시에는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녹차 제조회사가 커피 제품이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드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라고 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국내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판매대를 옆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판매하면서 한우고기임을 나타내는 여러형태의 표시판을 부착하고 국내산 쇠고기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 쇠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가.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품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박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아파트 또는 상가등의 분양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거리”라고만 표시·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조건 5,000원”이라고 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내로 들어가 보면 실제 5,000원 짜리는 몇개없고 그보다 고가인 7,000원, 10,000원 등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고가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 다.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시】

- ‘○○관리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제1회 시험실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시험일 확정’ 등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1회 시험은 합격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금번 시험의 합격자수가 미정임에도 2~3천명 선발 또는 고용의무화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타 자격시험에 비해 쉽다 라고 하거나 해당시험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평가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험합격시에는 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 등에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채용의무화 자격증’, ‘매월 고소득 보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민간자격증에 해당하는 ‘○○번역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공인자격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능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수험교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유명 교수집필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Ⅲ.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0호, 2008.6.18〉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5호, 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9호, 2011.9.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0호, 2012.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5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9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 주요사례

구분	내 용							
중도 해지 환급 불이행 으로 인한 피해상담	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중도 해지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피해 경우이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2조회원의 중도 해지 및 환급기준이 국제결혼 중개 단계에 따른 환급 기준이 되므로 중개 진행 단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해지 환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해내용 확인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2. 추가질문 - 중도 해지 사유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중도 해지 환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 해지 환급 요구에 대한 업체의 반응 확인 3. 요구사항 확인 - 해지환급 이행요구 - 해지환급 이행촉구 4. 관련 정보 제공 5. 상담처리 피해구제기관연계 1차 :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해결) [중도 해지환급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th style="width: 90%;">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피해 형태</td><td>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td></tr> <tr> <td>추가 질문</td><td> - 중도 해지 사유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 - 국내에 입국한 이후 - 중도 해지 환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 서면 작성 및 제공 여부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 - 해지 환급 요구에 따른 결혼중개업체의 반응 확인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 위약금 요구 </td></tr> <tr> <td>상담 처리</td><td>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추가 질문	- 중도 해지 사유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 - 국내에 입국한 이후 - 중도 해지 환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 서면 작성 및 제공 여부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 - 해지 환급 요구에 따른 결혼중개업체의 반응 확인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 위약금 요구	상담 처리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추가 질문	- 중도 해지 사유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 - 국내에 입국한 이후 - 중도 해지 환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 서면 작성 및 제공 여부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 - 해지 환급 요구에 따른 결혼중개업체의 반응 확인 - 중도 해지 환급 거부 - 중도 해지 환급 지연 - 위약금 요구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구분

내 용

구분	세부내용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소비자 부담 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전액)
	※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수수한 경우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방문판매·전화권유 판매 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인터넷 가입 혹은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 결제 시(20만원 이상, 3회 이상 할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손해배상] •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환급 또는 해지 거부와 관련한 많은 피해는 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즉시 돌려주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어 반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상담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으나 성혼이 되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현지에서 7일 맞선을 보았으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현지에서 계속 맞선을 주선하겠다는 중개업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입국했다. 결과적으로 신부감을 찾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실제경비(항공료, 숙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결혼중개업체는 이를 거부한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1항 안내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2조(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 안내

구분	내 용								
	○ 참조 사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방문판매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사업자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음날 바로 항공료 80만 원을 지급함. 일주일 후 소비자 사정으로 출국예정일을 미뤄야 하기에 계약해제 및 항공료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결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80만 원 전액을 환급해야 함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상담	계약서에는 없는 추가비용을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단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피해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피해내용 확인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 과다한 추가비용 요구 ▶ 2. 추가질문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3. 요구사항 확인 - 추가비용 환급 ▶ 4. 관련 정보 제공 ▶ 5. 상담처리 1차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해결) [추가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th style="width: 90%;">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피해 형태</td><td>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 과다한 추가비용 요구 </td></tr> <tr> <td>추가 질문</td><td>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총비용 및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td></tr> <tr> <td>상담 처리</td><td>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면 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 과다한 추가비용 요구	추가 질문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총비용 및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면 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 과다한 추가비용 요구								
추가 질문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총비용 및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면 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3 349 399 384">구분</th><th data-bbox="399 349 1297 384">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3 384 399 731"></td><td data-bbox="399 384 1297 731">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td></tr> <tr> <td data-bbox="323 731 399 1079">유의 사항</td><td data-bbox="399 731 1297 1079">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한다면 이용자들은 부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추가비용을 현지에서 요구하거나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분쟁의 1차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추가적 비용에 대해 합의하여 지불한 이후에는 환불받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 • 계약한 금액 외에 추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용돈, 한국어 교육, 기숙사 등의 비용은 계약과 별도로 개인 부담인 경우가 많다. 자율적인 판단 하에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돌려받기가 어려우니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제8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비용의 사용처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한다면 이용자들은 부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추가비용을 현지에서 요구하거나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분쟁의 1차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추가적 비용에 대해 합의하여 지불한 이후에는 환불받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 • 계약한 금액 외에 추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용돈, 한국어 교육, 기숙사 등의 비용은 계약과 별도로 개인 부담인 경우가 많다. 자율적인 판단 하에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돌려받기가 어려우니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제8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비용의 사용처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를 진행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한다면 이용자들은 부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 추가비용을 현지에서 요구하거나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분쟁의 1차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추가적 비용에 대해 합의하여 지불한 이후에는 환불받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 • 계약한 금액 외에 추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용돈, 한국어 교육, 기숙사 등의 비용은 계약과 별도로 개인 부담인 경우가 많다. 자율적인 판단 하에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돌려받기가 어려우니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제8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비용의 사용처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상담사례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000만원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으로 나갔다. 계약서에는 “추가비용없음”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결혼이 거의 성사되어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결혼중개업자는 계약된 내용 외에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 안내						
	○ 참조 사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시 일체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현지에서 사업자가 체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50달러를 추가 지급함. 귀국 후 계약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지급된 추가 비용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결과) 약관과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가 일체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250달러를 환급해야 함						

구분	내 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상담	결혼중개 과정에서 내담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결혼중개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해내용 확인 2. 추가질문 3. 요구사항 확인 4. 관련 정보 제공 5. 상담처리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th style="width: 90%;">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피해 형태</td><td> - 과다한 위약금 요구 </td></tr> <tr> <td>추가 질문</td><td> - 위약금 발생 내용(귀책사유) 확인 - 이용자 귀책 - 사업자 귀책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위약금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td></tr> <tr> <td>상담 처리</td><td>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되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2항, 제3항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추가 질문	- 위약금 발생 내용(귀책사유) 확인 - 이용자 귀책 - 사업자 귀책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위약금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상담 처리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추가 질문	- 위약금 발생 내용(귀책사유) 확인 - 이용자 귀책 - 사업자 귀책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위약금에 관한 계약서 내용 확인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계약서 내용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되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2항, 제3항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26 327 402 363">구분</th><th data-bbox="402 327 1295 363">세부내용</th></tr> <tr> <td data-bbox="326 363 402 1203"></td><td data-bbox="402 363 1295 1203">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table border="1"> <tr> <th data-bbox="405 425 943 461">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th><th data-bbox="943 425 1292 461">소비자 부담 기준</th></tr> <tr> <td data-bbox="405 461 943 498">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td><td data-bbox="943 461 1292 498">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td></tr> <tr> <td data-bbox="405 498 943 535">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td><td data-bbox="943 498 1292 535">총 비용의 20%</td></tr> <tr> <td data-bbox="405 535 943 572">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td><td data-bbox="943 535 1292 572">총 비용의 40%</td></tr> <tr> <td data-bbox="405 572 943 609">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td><td data-bbox="943 572 1292 609">총 비용의 50%</td></tr> <tr> <td data-bbox="405 609 943 645">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td><td data-bbox="943 609 1292 645">총 비용의 90%</td></tr> <tr> <td data-bbox="405 645 943 682">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td><td data-bbox="943 645 1292 682">총 비용 (전액)</td></tr> </table> [손해배상]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이용자가 결혼이 성립되기 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중개업소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인지, 이용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td></tr> <tr> <td data-bbox="208 1208 323 1610"></td><td data-bbox="323 1208 1298 1610"> ○ 상담사례 P씨는 H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에 해당 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계약을 했다. 맞선 장소에서 해당 여성이 P씨와의 맞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였고 H업체는 다른 사람과의 맞선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맞선을 본 여성에게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된 P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H업체는 현지 중개 진행에 따른 위약금 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내용 이첩 </td></tr> <tr> <td data-bbox="208 1610 323 1821">예비 배우자 정보 부실·허위 제공으로 인한</td><td data-bbox="323 1610 1298 1821">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선 전 예비배우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신상정보의 각 문서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td></tr> </table>	구분	세부내용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table border="1"> <tr> <th data-bbox="405 425 943 461">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th><th data-bbox="943 425 1292 461">소비자 부담 기준</th></tr> <tr> <td data-bbox="405 461 943 498">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td><td data-bbox="943 461 1292 498">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td></tr> <tr> <td data-bbox="405 498 943 535">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td><td data-bbox="943 498 1292 535">총 비용의 20%</td></tr> <tr> <td data-bbox="405 535 943 572">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td><td data-bbox="943 535 1292 572">총 비용의 40%</td></tr> <tr> <td data-bbox="405 572 943 609">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td><td data-bbox="943 572 1292 609">총 비용의 50%</td></tr> <tr> <td data-bbox="405 609 943 645">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td><td data-bbox="943 609 1292 645">총 비용의 90%</td></tr> <tr> <td data-bbox="405 645 943 682">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td><td data-bbox="943 645 1292 682">총 비용 (전액)</td></tr> </table> [손해배상]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이용자가 결혼이 성립되기 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중개업소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인지, 이용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부담 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전액)		○ 상담사례 P씨는 H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에 해당 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계약을 했다. 맞선 장소에서 해당 여성이 P씨와의 맞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였고 H업체는 다른 사람과의 맞선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맞선을 본 여성에게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된 P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H업체는 현지 중개 진행에 따른 위약금 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내용 이첩	예비 배우자 정보 부실·허위 제공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선 전 예비배우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신상정보의 각 문서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구분	세부내용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table border="1"> <tr> <th data-bbox="405 425 943 461">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th><th data-bbox="943 425 1292 461">소비자 부담 기준</th></tr> <tr> <td data-bbox="405 461 943 498">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td><td data-bbox="943 461 1292 498">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td></tr> <tr> <td data-bbox="405 498 943 535">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td><td data-bbox="943 498 1292 535">총 비용의 20%</td></tr> <tr> <td data-bbox="405 535 943 572">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td><td data-bbox="943 535 1292 572">총 비용의 40%</td></tr> <tr> <td data-bbox="405 572 943 609">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td><td data-bbox="943 572 1292 609">총 비용의 50%</td></tr> <tr> <td data-bbox="405 609 943 645">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td><td data-bbox="943 609 1292 645">총 비용의 90%</td></tr> <tr> <td data-bbox="405 645 943 682">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td><td data-bbox="943 645 1292 682">총 비용 (전액)</td></tr> </table> [손해배상]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이용자가 결혼이 성립되기 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중개업소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인지, 이용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부담 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전액)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부담 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총 비용 중 중개 수수료의 10%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	총 비용의 20%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총 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총 비용 (전액)																						
	○ 상담사례 P씨는 H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에 해당 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계약을 했다. 맞선 장소에서 해당 여성이 P씨와의 맞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였고 H업체는 다른 사람과의 맞선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맞선을 본 여성에게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된 P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H업체는 현지 중개 진행에 따른 위약금 000만원을 요구하였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내용 이첩																						
예비 배우자 정보 부실·허위 제공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선 전 예비배우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신상정보의 각 문서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구분	내 용				
	여부(국문번역자료 포함)도 함께 확인한다. 1. 피해내용 확인 2. 추가질문 3. 요구사항 확인 4. 관련 정보 제공 5. 상담처리 [예비배우자 정보부실·허위제공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table> <tr> <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 <td>피해상담</td><td> 피해 형태 추가 질문 상담 처리 </td></tr> </table>	구분	세부내용	피해상담	피해 형태 추가 질문 상담 처리
구분	세부내용				
피해상담	피해 형태 추가 질문 상담 처리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6 327 399 363">구분</th><th data-bbox="399 327 1298 363">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6 363 399 854"></td><td data-bbox="399 363 1298 85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신상정보제공서류, 그 밖의 혼인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열람·사본 교부 등의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td></tr> <tr> <td data-bbox="326 854 399 1052">유의 사항</td><td data-bbox="399 854 1298 1052"> -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체라면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민법 등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서면으로 제공받는 신상정보 외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임신불능, 과거 동거사실, 가발착용 여부, 심한 화상자국, 문신 등)로 작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고지 및 근거자료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신상정보제공서류, 그 밖의 혼인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열람·사본 교부 등의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체라면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민법 등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서면으로 제공받는 신상정보 외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임신불능, 과거 동거사실, 가발착용 여부, 심한 화상자국, 문신 등)로 작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고지 및 근거자료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신상정보제공서류, 그 밖의 혼인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열람·사본 교부 등의 내용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체라면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민법 등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서면으로 제공받는 신상정보 외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임신불능, 과거 동거사실, 가발착용 여부, 심한 화상자국, 문신 등)로 작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고지 및 근거자료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상담사례 C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OO국가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0000만원에 계약 후 결혼을 하고자 신상정보를 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C씨는 그래도 여성이 마음에 들어 결혼한 후 한국에 돌아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지에서 결혼한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업체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C씨에게 이 여성이 이미 아이도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고 했다. C씨는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한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 안내						
	○ 참고판례 갑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을 회사와 계약을 체결 후, 회사직원 병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정을 소개 받아 혼인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무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정의를 행세를 한 것을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을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함.						

구분

내 용

(다만, 갑이 혼인당사자로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고, 을 회사 입장에서도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의 비자발급·입국수속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피해 경우이다. 비자발급·입국수속 관련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사태를 우선 파악하여 귀책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재외대한민국공관에 결혼 당사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1. 피해내용 확인

• 비자발급·입국수속 지연

• 비자발급·입국수속 미진행

▶

2. 추가질문

• 비자발급·입국수속 관련 진행 상황 확인

• 지연 귀책사유 확인

▶

3. 요구사항 확인

• 비자발급·입국수속 진행

• 피해보상

▶

4. 관련 정보 제공

▶

5. 상담처리

1차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해결)

[비자발급·입국수속대행 관련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비자발급·입국수속 지연

• 비자발급·입국수속 미진행

추가 질문

• 비자발급·입국수속 관련 진행 상황 확인

– 재외대한민국공관에 결혼 당사자가 직접 연락

•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사태 파악(귀책사유 확인)

– 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작성 및 서류 신청 기일 초과 제출

– 이용자와 관련한 주거지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사증이 불허된 경우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에 비자발급·입국수속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

[관련정보제공]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자는 회원에게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7항, 제10항에서 사업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비자발급·입국수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자발급
·
입국수속
대행 관련
피해상담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28 327 400 367">구분</th><th data-bbox="400 327 1294 367">세부내용</th></tr> <tr> <td data-bbox="328 367 400 592"></td><td data-bbox="400 367 1294 592">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td></tr> <tr> <td data-bbox="328 592 400 768">유의 사항</td><td data-bbox="400 592 1294 768"> • 내담자가 재외대한민국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신청 여부 및 비자신청 거부 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 만일 결혼중개업의 부실한 서류작성과 서류 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다. • 내담자와 관련한 주거지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사증이 불허된 경우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td></tr> </table>	구분	세부내용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내담자가 재외대한민국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신청 여부 및 비자신청 거부 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 만일 결혼중개업의 부실한 서류작성과 서류 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다. • 내담자와 관련한 주거지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사증이 불허된 경우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구분	세부내용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내담자가 재외대한민국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신청 여부 및 비자신청 거부 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 만일 결혼중개업의 부실한 서류작성과 서류 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다. • 내담자와 관련한 주거지 및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사증이 불허된 경우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상담사례 P씨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다. 심사가 통과 되면 4월에 신부가 국내로 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10월이 되어도 신부가 오지 않았다. 중개업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영사관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했다.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왜 거부되었는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P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업체는 재심사를 하도록 서류를 다시 달라고 한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 제1항) • 내담자가 배우자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서류심사과정에서 거부된 이유를 문의, 서류심사가 거부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안내 •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이미 혼인신고를 한 혼인관계에 대한 혼인무효 또는 이혼소송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						
하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상담	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현지에 갔으나 사진에 있었던 사람은 없거나 맞선을 거부하여 다른 사람과 맞선을 진행하게 된 피해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선 전 예비배우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신상정보 각 문서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여부(국문번역자료 포함)도 확인한다.						

구분	내 용				
	1. 피해내용 확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의 여성이 맞선녀가 아닐 경우	2. 추가질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 제공받은 신상정보 내용 확인	3. 요구사항 확인 - 피해보상 - 업체처벌	4. 관련 정보 제공	5. 상담처리 - 피해구제 기관연계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행정처분 국제결혼중개업 관할관청(시·군·구) - 형사처분 수사기관(경찰, 검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의 여성이 맞선녀가 아닐 경우				
추가 질문	-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여부 확인 -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확인 - 제공받은 신상정보 내용 확인 - 이름, 나이, 학력, 혼인경험, 자녀유무, 건강, 직장, 범죄경력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손해배상]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구분	내 용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업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영업하는 이른바 ‘미끼’영업의 수단이며 미끼영업을 한 중개 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사진’만을 보고 해당 여성을 선택하겠다는 잘못된 태도를 인식시키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 중개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졌다면 그와 관련한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절한 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상담사례 K씨는 2010년 7월초 중개업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베트남 여성 사진을 보고 해당 여성과의 맞선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중개업소 관계자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하여 며칠 후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결혼추진 비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K씨는 한 달 뒤 베트남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맞선을 보았으나 계약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여성이 아니었다. 결국 당초 약속한 사진에 있는 여성은 만나지 못하고 이와 전혀 다른 여성들과 맞선이 진행되었고, 맞선 도중 현지 마담이 결혼경비 명목으로 USD 1,300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으나 K씨가 지정한 예비신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예비신부는 K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혼담 진행을 중단하였다. K씨는 사진과 다른 여성과의 맞선 행위와 추가비용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항의하고 중개업자에게 기 지급한 대금 9백만 원 중 6백5십만 원과 USD 1,300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 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에 상담내용 이첩
불성실 맞선 행사 준비로 인한 피해상담	현지 맞선에 나온 예비 배우자가 사전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아닌 급하게 동원된 듯한 사람이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과의 맞선을 종용하거나 강요한 피해 경우이다. 또한 1:1 맞선이 아닌 집단 및 동시 맞선이라는 무분별한 중개로 인한 피해가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선 전 예비배우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신상정보 각 문서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여부(국문번역 자료 포함)도 확인한다.

구분	내 용				
	1. 피해내용 확인 • 맞선 전 예비배우자 정보 미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외모나 가정형편의 예비배우자와 맞선 • 집단 맞선	2. 추가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 제공받은 신상정보 내용 확인	3. 요구사항 확인 • 피해보상 • 업체처벌	4. 관련 정보 제공	5. 상담처리 ▶ 피해구제 기관연계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행정처분 국제결혼중개업 관할관청(시·군·구) ▶ 형사처분 수사기관(경찰, 검찰)
[불성실 맞선 행사 준비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맞선 전 예비배우자 정보 미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외모나 가정형편의 예비배우자와 맞선 •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 받음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				
추가 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국제결혼중개 약관 - 회원가입 계약서 -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확인 • 제공받은 신상정보 내용 확인 - 이름, 나이, 학력, 혼인경험, 자녀유무, 건강, 직장, 범죄경력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8 327 400 363">구분</th><th data-bbox="400 327 1298 363">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8 363 400 1391"></td><td data-bbox="400 363 1298 1391">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td></tr> <tr> <td data-bbox="328 1391 400 1396">유의 사항</td><td data-bbox="400 1391 1298 1396"> • 여러 명을 소개 받았으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맞선 전 신상제공 여부 및 제공된 신상정보의 내용 확인 필요 •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가 허위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상담 진행 필요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여러 명을 소개 받았으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맞선 전 신상제공 여부 및 제공된 신상정보의 내용 확인 필요 •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가 허위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상담 진행 필요
구분	세부내용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여러 명을 소개 받았으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맞선 전 신상제공 여부 및 제공된 신상정보의 내용 확인 필요 •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가 허위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상담 진행 필요						
	○ 상담사례 S씨는 인터넷으로 국제결혼 대행사를 알게 되어 결혼추진금 1천만 원과 성혼 사례금 1천 1백만 원 등 총 2천 6백만 원을 주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거주 탈북 여성과 중국 여성 등 여러 명을 소개 받았으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어떤 여성은 허위학력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의사 없이 나온 여성, 성의 없이 슬리퍼 신고 나온 여성 등 중개업자의 행사준비가 엉망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외모나 가정형편을 가진 여성이 많았다. S씨는 중개업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기 지급한 결혼추진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구분	내 용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 안내								
현지 결혼 신고 법령 무지로 인한 피해상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자의 현지 결혼 신고 관련 법령 무지로 인해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한국으로 다시 갔다가 현지로 다시 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추가 비용 발생 및 초청 비자신청이 연기되는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해내용 확인 • 사전 설명에 없던 혼인신고 및 비자 관련 서류 문제로 다시 출국에 드는 비행기표 및 경비 본인 부담 요구 ➤ 2. 추가질문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3. 요구사항 확인 • 피해보상 ➤ 4. 관련 정보 제공 ➤ 5. 상담처리 1차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해결) [현지 결혼신고 법령 무지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피해 형태</td><td>• 사전 설명에 없던 혼인신고 및 비자 관련 서류 문제로 다시 출국하는데 드는 비행기표 및 경비 본인 부담 요구</td></tr> <tr> <td>추가 질문</td><td>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총비용 및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td></tr> <tr> <td>상담 처리</td><td>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되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면 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사전 설명에 없던 혼인신고 및 비자 관련 서류 문제로 다시 출국하는데 드는 비행기표 및 경비 본인 부담 요구	추가 질문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총비용 및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되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면 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사전 설명에 없던 혼인신고 및 비자 관련 서류 문제로 다시 출국하는데 드는 비행기표 및 경비 본인 부담 요구								
추가 질문	• 중개업체 사무실 방문 계약 여부 확인 • 업체 사무실의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게시 여부 확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총비용 및 추가요금에 대한 계약서 상 내용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결혼 표준약관 준수 여부 확인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작성, 교부되어야 한다.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면 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8조제5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로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26 327 399 367">구분</th><th data-bbox="399 327 1298 367">세부내용</th></tr> <tr> <td data-bbox="326 367 399 895"></td><td data-bbox="399 367 1298 895">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td></tr> <tr> <td data-bbox="326 895 399 1044">유의 사항</td><td data-bbox="399 895 1298 1044"> - 현지 규정 미숙지로 인한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 -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방안 적극 검토 및 지원할 필요 있다. 2016년 1월부터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사전 인터뷰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결혼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허용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뷰 담당 공무원의 뇌물성 금품 또는 2차 인터뷰를 위한 출국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td></tr> </table>	구분	세부내용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현지 규정 미숙지로 인한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 -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방안 적극 검토 및 지원할 필요 있다. 2016년 1월부터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사전 인터뷰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결혼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허용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뷰 담당 공무원의 뇌물성 금품 또는 2차 인터뷰를 위한 출국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손해배상] 1차: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지 않은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현지 규정 미숙지로 인한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 -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방안 적극 검토 및 지원할 필요 있다. 2016년 1월부터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사전 인터뷰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결혼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허용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뷰 담당 공무원의 뇌물성 금품 또는 2차 인터뷰를 위한 출국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 상담사례 소개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Y씨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위하여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담당 부장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결혼 절차를 안내 받았다. 설명 내용은 결혼을 위해 1회 입국 만으로 결혼식 및 결혼신고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입국 전 K은행을 통해 2회에 걸쳐 계약서 상의 결혼성사비용 및 결혼 등에 필요한 행사비용 1,355만 원을 중개업소 계좌로 입금하였다. Y씨는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여 맞선을 본 후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Y씨는 중개업자와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현지 결혼신고에 필요한 미혼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최근 우즈베키스탄 결혼관련 내부규정이 바뀌어 주한 우즈베키스탄 영사관에서 해당 서류 발급을 받은 후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Y씨는 중개업자 설명 내용과 달리 1회가 아닌 2회 입국을 하여 결혼신고를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니 왕복항공료는 Y씨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중개업자는 숙박비만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Y씨는 왕복항공료(1,806,000원)에 대해서도 부담을 요구했으나 중개업자는 답변이 없었다.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되면 결혼 성사가 어려워지므로 Y씨는 우선 왕복항공료와 숙박료를 자부담으로 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여 결혼신고를 하였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 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에 상담내용 이첩						

구분

내 용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계약서상의 내용과 소개약속 미이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 피해내용 확인

• 결혼중개 알선 지연, 거부

• 사전에 선택한 예비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의 만남 강요

• 맞선기회 계약서 보다 적게 이행

▶

2. 추가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 제공받은 신상정보 내용 확인

▶

3. 요구사항 확인

• 피해보상

• 업체처벌

▶

4. 관련 정보 제공

▶

5. 상담처리

피해구제 기관연계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행정처분

국제결혼중개업 관할관청(시·군·구)

▶

형사처분

수사기관(경찰, 검찰)

[소개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결혼중개 알선 지연, 거부

• 사전에 선택한 예비배우자가 아닌 다른 예비배우자와의 만남을 현지에서 강요

• 맞선의 기회를 계약서보다 적게 이행한 경우

추가 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국제결혼중개 약관

– 회원가입 계약서

–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 확인

• 제공받은 신상정보 내용 확인

– 이름, 나이, 학력, 혼인경험, 자녀유무, 건강, 직장, 범죄경력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나누어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5 322 400 363">구분</th><th data-bbox="400 322 1298 363">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5 363 400 1308"></td><td data-bbox="400 363 1298 1308">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 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td></tr> <tr> <td data-bbox="325 1308 400 1443">유의 사항</td><td data-bbox="400 1308 1298 1443"> • 맞선의 기회를 계약서보다 적게 이행한 경우는 미이행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 사진과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과 다른 예비배우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 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맞선의 기회를 계약서보다 적게 이행한 경우는 미이행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 사진과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과 다른 예비배우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중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 중개업체가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확인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확인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 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예비배우자의 결혼관련 개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 1차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2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법에 의거 손해배상 피해구제 이첩을 통한 피해구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 가능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의뢰] •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 맞선의 기회를 계약서보다 적게 이행한 경우는 미이행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 사진과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약과 다른 예비배우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담사례 P씨는 결혼정보회사 통하여 국제결혼 회원 가입을 하였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인터넷상에서 선택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선택 후 현지에서 소개 받는데 본인이 선택한 상대방 단 1명도 소개 해주지 않고 수준 미달인 사람들만 소개 해주었다. 이에 P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의 계약 이행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서면 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안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1조						

구분	내 용							
	제1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 안내							
사업자 연락불가(폐업)로 인한 피해상담	사업자의 연락불가(폐업)로 결혼 중개 중단 및 환급 불가로 인한 피해 경우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업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정식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인지 우선 확인한 후 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가능하므로 피해발생 시점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피해내용 확인 • 사업자 연락불가(폐업)로 인한 결혼중개 중단 및 환급 불가 ➤ 2. 추가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국제결혼 총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확인 및 납부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 3. 요구사항 확인 • 피해보상 ➤ 4. 관련 정보 제공 ➤ 5. 상담처리 1차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 2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해결)							
	[사업자 연락불가(폐업)로 인한 피해상담 업무흐름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th style="width: 90%;">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해 형태</td><td> • 사업자 연락불가(폐업)로 인한 결혼 중개 진행 중단 및 환급 불가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질문</td><td>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국제결혼 총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확인 및 납부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담 처리</td><td>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사업자 연락불가(폐업)로 인한 결혼 중개 진행 중단 및 환급 불가	추가 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국제결혼 총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확인 및 납부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상담 처리
구분	세부내용							
피해 형태	• 사업자 연락불가(폐업)로 인한 결혼 중개 진행 중단 및 환급 불가							
추가 질문	• 계약내용 서면 체결 및 제공 여부 확인 • 국제결혼 총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확인 및 납부 여부 확인 • 결혼 중개 진행 단계 확인 • 맞선 전 신상정보 서면 제공 여부 확인							
상담 처리	[등록업체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확인 [계약서 내용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상정보 제공 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예비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여부 포함)							

구분	내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3 322 400 363">구분</th><th data-bbox="400 322 1298 363">세부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3 363 400 680"></td><td data-bbox="400 363 1298 680">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td></tr> <tr> <td data-bbox="323 680 400 950">유의 사항</td><td data-bbox="400 680 1298 950"> •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과 예치금 제도에 따라 폐업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라도 보험가입 기간 중에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는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 손해 발생 시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다툼 여부에 따라 청구 서류 및 처리방안이 다르다.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과 예치금 제도에 따라 폐업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라도 보험가입 기간 중에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는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 손해 발생 시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다툼 여부에 따라 청구 서류 및 처리방안이 다르다.
구분	세부내용						
	※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확인(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각 문서에 대한 국문번역자료와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받도록 한다. [관련정보제공]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과 예치금 제도에 따라 폐업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라도 보험가입 기간 중에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는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 손해 발생 시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용자와 중개업자간의 다툼 여부에 따라 청구 서류 및 처리방안이 다르다.						
	○ 상담사례 I씨는 2011년 5월 초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하고 400만원 지불하였다. 이후 3회 소개를 받았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다. 지금 해당업체는 폐업 했고 그 자리에 상호가 바뀌고 사업자가 바뀌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서비스를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계약해지 환불요청 하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 결혼중개업체 등록업체 확인 안내 • 결혼중개업자는 신고 및 등록 전에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안내 • 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 결혼중개업 소재 사·도 해당 관청 국제결혼중개업 담당자에게 문의 안내						

2018년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Ⅰ 인 쇄 : 2017년 12월

Ⅰ 발 행 : 2017년 12월

발행인 : 정 현 백

발행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375

FAX / 02-2100-6485

인쇄처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TEL 02 - 325 - 1585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89-10

